

獨立國家共同體(CIS) 憲章

1993. 6.

한국법제연구원

「외국법제동향분석」은 외국법제의 해설과 입법동향의 소개를 통해서 국내입법관계자의 입법활동과 우리나라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외국법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연구자 및 일반국민에게 도움을 주기위해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한국법제연구원

110-062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2가 1-103

전화번호 (02)722-0163/5

연구책임자

수석연구원 문준조

수석연구원 정상조

선임연구원 최철영

목 차

제 1 부 주요 외국법제해설

I. 獨立國家共同體(CIS) 憲章	7
II. 中華人民共和國 憲法 改正	19

제 2 부 외국입법동향

I. 러시아·동구입법동향	26
1. 러시아 / 26	
2. 헝가리 / 27	
3. 체코 / 31	
II. 중국입법동향	39
III. 유럽공동체(EC)입법동향	48
1. 유럽공동체입법 / 48	
2. 유럽공동체법원판례 / 64	

제 1 부

주요 외국법제해설

I. 獨立國家共同體(CIS) 憲章

〈해설〉

1991년 12월 8일 러시아공화국, 우크라이나공화국, 벨로루시공화국 등 3개 슬라브系공화국의 대통령에 의한 蘇聯邦의 해체와 獨立國家聯合의 創設宣言을 계기로 형성된 독립국가공동체는, 동년 12월 21일 카자흐공화국의 수도 알마아타에서 발트 3국과 그루지아를 제외한 舊소련의 11개 공화국 대통령이 모여 독립국가연합의 출범에 관한 6개 協定에 서명함으로써 독립국가공동체헌장의 채택에 이르기 위한 공식적인 첫 단계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獨立國家共同體憲章의 채택에 이르는 과정에서 알마아타협정에 참여했던 아제르바이잔共和國은 러시아와의 정치적 갈등으로 '92년 10월 8일 탈퇴를 선언하였으며 우크라이나, 몰도바, 투르크메니스탄 등의 3개국은 독립국가헌장채택, 미국과의 START-II 후속조치합의, 독립국가공동체 국제은행과 법원설립, 타지크공화국 사태의 평화적 해결과 난민 처리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독립국가공동체 頂上會談에는 참여하여 다른 사항들에 대하여는 합의하였으나 독립국가공동체헌장의 채택에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調印하지 않음으로써 독립국가공동체 체제의 취약한 결속력을 다시 한번 노정하였다. 하지만 이들 3개국에 대하여 독립국가공동체 헌장은 개방되어 있으며 러시아의 엘친대통령은 3개국의 後續的 調印을 낙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1993년 1월 22일 벨로루시의 수도 민스크시에서 러시아語로 작성된 독립국가공동체헌장의 채택에 참여한 국가는 아르메니아,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연방, 타지키스탄공화국,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등 7개국이다.

獨立國家共同體(CIS) 憲章

독립국가 공동체(이하 공동체)에 자발적으로 결집한 국가는 각국과 각국 국민 사이에 형성된 관계의 역사적인 공통성에 기인해, 일반적으로 승

인된 국제법의 원칙과 기준, 국제연합헌장의 규정, 유럽안보협력회의 헬싱키 최종문서 및 그 밖의 문서에 따라서 행동하고, 공동의 노력에 따른 그 국민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의 확보를 지향하며, 독립국가 공동체 설립협정의 규정, 이 협정의 의정서 및 알마타선언의 규정을 실현시킨다는 결의에 충실하여, 국제적인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그것과 같은 노력으로 국내평화와 민족간의 우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상호협력을 발전시키고, 가맹국 모든 국민의 문화가 보존되고 발전하기 위한 조건을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하며, 공동체 내부의 협력체제의 완성과 그 효율의 향상을 지향하고, 공동체헌장을 채택할 것을 결의하며 다음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제 1 편 目的과 原則

제1조 공동체는 그 가맹국의 완전한 주권평등의 원칙에 근거하여 창설된다. 가맹국은 국제법상의 독립된 평등한 주체이다. 공동체는 가맹국간의 우호, 선린, 민족간의 합의, 신뢰, 상호 이해 및 호혜적인 협력관계의 발전과 강화에 공헌한다. 공동체는 국가가 아니며, 한 국가의 영역을 넘는 권한을 갖지 않는다.

제2조 공동체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정치, 경제, 환경, 인간, 문화 그 밖의 영역에서의 협력 실시; 공동 경제권의 구조 속에서 모든 면에 걸친 가맹국의 균형있는 경제적, 사회적 발전, 국가협력과 통합;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의 원칙과 규범, 유럽안보협력회의 문서에 의한 인간의 권리와 기본적 자유의 보장; 국제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가맹국간의 협력, 군비와 군사지출을 축소하고 핵과 그 밖의 대량살상병기를 폐기하고 전체적이고 완전한 군축을 달성하기 위한 유효한 조치의 실시; 가맹국 시민이 공동체 내에서 자유롭게 교류, 접촉 및 이동하는 것에 대한 지원; 상호 사법사무원조와 다른 법률관련분야에서의 협력; 공동체 국가간의 다툼 및 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3조 가맹국은 공동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과 헬싱키 최종문서의 규범에 근거하여, 다음의 상호관계와 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자신들의 관계를 형성한다.

가맹국의 주권, 각국 국민에게 불가분의 권리인 자결권 및 외부의 간섭없이 자신의 운명을 선택하는 권리의 존중; 국경의 변경불가, 현재의 국경승인 및 불법적 영토획득의 거부; 국가의 영토보전과 타국 영토의 분할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행위의 거부; 가맹국의 정치적 독립에 대한 무력의 행사 또는 무력에 의한 위협의 사용금지; 국제평화, 안전 및 평등에 위협을 주지않는 형태로 평화적 수단에 의한 분쟁의 해결; 국가간의 관계에 있어서 국제법의 우위; 상호간의 국내, 국외문제에 대한 불간섭; 인권의 보장 및 인종적, 민족적인 소속, 언어, 종교, 정치 그 밖의 신념에 의한 차별이 없는 모든 인간의 기본적 자유의 보장; 본 헌장을 포함한 공동체 문서에 의해서 발생하는 의무에 대한 각 구성국의 자발적인 이행; 상호 공동체 전체의 이익 고려, 가맹국 상호관계의 모든 영역에서 상호합의에 근거한 원조 실시; 공동체 가맹국 국민의 평화적인 생활조건을 만들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노력의 결집과 상호 원조 실시, 그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발전의 보증; 호혜적인 경제, 과학기술 협력의 발전, 통합과정의 확대; 가맹국 국민의 독자성 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정신적 단결, 문화재의 보존과 문화교류에 있어서의 긴밀한 협력.

제4조 공동체기구 내에서 가맹국이 맡은 의무에 따라, 공동 조정기관을 통해 평등하게 실현될 가맹국의 공동활동영역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다 :

인간의 권리와 기본적 자유의 보장; 대외정책활동의 조정; 공동경제권, 유럽공동시장, 유라시아 시장의 형성과 발전, 관세정책에 있어서의 협력; 교통, 통신시스템의 발전을 위한 협력; 건강과 환경의 보호; 사회 및 이주정책에 관한 문제; 조직범죄에 대한 대책; 방위정책 및 국경경비영역에 있어서의 협력.

이 목록은 가맹국간의 상호 합의에 의해 보충될 수 있다.

제5조 공동체기구내에서 국가간 관계의 주요한 법적 기초는 가맹국의 상호관계의 여러 영역에 있어서 다국간, 양국간의 협정이다.

공동체의 기구내에서 체결된 협정은 공동체의 목적과 원칙, 본 헌장에 의한 가맹국의 의무에 합치되어야 한다.

제6조 가맹국은 국가기관, 사회단체, 경제기구간의 협력과 관계발전을 지원한다.

제 2 편 構成國

제7조 공동체의 설립국은 본 헌장채택에 이르기까지, 1991년 12월8일의 독립국가 공동체 설립협정 및 91년 12월21일의 동 협정의정서에 조인하고, 비준한 국가이다.

공동체 가맹국은 국가원수평의회에 의한 본 헌장채택후 1년이내에 본 헌장에 의한 의무를 수용한 설립국이다.

또 쏘가맹국의 동의에 의해 공동체에 가입이 허용되고, 공동체의 목적과 원칙을 서로 인정하고, 본 헌장에 포함된 의무를 이행하는 국가는 공동체의 구성국이 될 수 있다.

제8조 준가맹국에 관한 협정이 규정할 조건 중에서 공동체 개개영역의 활동에 참여를 희망하는 국가는 국가원수평의회의 결정에 근거해서, 준가맹국으로서 공동체에 가입할 수 있다.

국가원수평의회의 결정에 따라, 공동체 각 기관의 회의에는 타국의 대표가 옵서버로서 출석할 수 있다.

준가맹국 및 옵서버의 공동체 각 기관의 활동 참여에 관한 문제는 그들 기관의 절차상의 규칙에 의해서 조정된다.

제9조 가맹국은 공동체로부터 탈퇴할 권리를 갖는다. 가맹국은 탈퇴의 의사를 그 12개월전에 본 헌장의 보관국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본 헌장에 의해 가맹기간중에 파생된 의무는 그것이 완전하게 이행될 때까지 해당국에게 구속력이 있다.

제10조 가맹국에 의한 본 헌장의 위반, 가맹국에 의한 공동체기구 내에서 체결된 협정상의 의무 또는 공동체 각 기관의 결정의 상습적인 불이행은 국가원수평의회에 의해 심사된다.

이러한 국가에 대해서는 국제법이 인정하고 있는 조치가 적용된다.

제 3 편 集團安全保障과 軍事·政治協力

제11조 가맹국은 국제적인 안전보장, 군축 및 군비관리, 군수건설분야에서 조정된 정책을 실시하고, 군사 읍서버, 그룹 및 집단평화유지군에 의한 지원을 포함해서 공동체내의 안전을 유지한다.

제12조 가맹국 중의 한 국가 또는 여러 국가의 주권, 안전, 영토보전 또는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 발생한 경우, 가맹국은 입장을 조정하여, 국제연합헌장 제51조가 정하는 개별 또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절차에 따른 평화유지활동 및 필요한 경우의 군사력 행사를 포함하고, 발생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목적으로 즉각 상호 협의체제를 발동시킨다.

군사력의 공동행사에 관한 결정은 공동체 국가원수평의회 또는 공동체 가맹 당사국에 의해 그들의 국내법을 고려하여 채택된다.

제13조 각 가맹국은 공동체 가맹국의 대외 국경에서 안정된 상황을 확보하기 위해, 적당한 조치를 강구한다. 상호 합의에 근거하여, 가맹국은 가맹국 국경의 통과에 관한 일정한 절차를 감독하고, 책임지는 국경 경비군과 그 외 관할부대의 활동을 조정한다.

제14조 방위 및 가맹국 대외 국경의 경비문제에 관한 공동체의 최고기관은 국가원수평의회이다. 공동체의 군사·경제활동의 조정은 정부수뇌평의회가 행한다.

안전보장, 군축분야에 있어서 국제협정을 이행하고, 다른 문제를 해결할 때의 가맹국의 상호 활동은 공동의 협의에 근거해서 진행된다.

제15조 가맹국의 군사·정치협력에 관한 구체적인 문제는 특별 협정에 의

해서 조정된다.

제 4 편 紛爭의 防止와 解決

제16조 가맹국은 민족간 및 종교간의 기본적인 인권침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조치를 강구한다.

가맹국은 그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기구의 조직에 의한 것을 포함하고, 상호 합의에 근거해 상호지원한다.

제17조 공동체 가맹국은 다른 가맹국에게 손해를 주어, 분쟁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는 행동을 자제한다.

가맹국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적합한 절차에 관한 교섭 또는 합의의 달성을 통해, 자신들의 분쟁을 성실과 협력정신으로 공평하고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가맹국이 본 조 제2항에서 지적되고 있는 수단을 사용해도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가맹국은 그 분쟁을 국가원수평의회에 맡긴다.

제18조 국가원수평의회는 계속되는 분쟁이 공동체내의 평화 또는 안전유지에 위협을 줄 위험이 있는 경우, 그 정도의 단계에서도, 당사자에게 적합한 해결의 절차 또는 방법을 권고할 권한을 갖는다.

제 5 편 經濟的, 社會的, 司法的 分野에서의 協力

제19조 가맹국은 경제적, 사회적인 영역에 있어서 다음의 분야에서 협력한다 :

시장관계 및 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기초로 하는 공동 경제권의 형성; 사회정책의 조정, 경제개혁실시에 따른 사회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공동의 사회적 프로그램과 조치의 수립; 수송, 통신시스템 및 에너지시스템의 발전; 신용, 금융정책의 조정; 가맹국의 통상, 경제관계발전의 지원; 투자장려와 상호보호; 공업제품, 상품 규격화, 품질인정의 촉진; 지적소유권의 법적 보호; 공동정보공간

발전의 지원; 공동의 자연보호 조치실시, 환경파괴와 그 외의 긴급사태의 결과를 제거하기 위한 상호원조; 과학기술, 교육, 보건, 스포츠의 분야에서 공동의 계획 및 프로그램의 실시.

제20조 가맹국은 다국간, 양국간의 사법사무원조조약의 체결을 중심으로 법률분야에서 협력하고, 각 국의 법률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공동활동영역의 관계를 규정할 각 가맹국의 범규범 사이에 대립이 발생한 경우, 가맹국은 이들 대립을 없애는 제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협의와 교섭을 행한다.

제 6 편 共同體의 機關

〈국가원수평의회와 정부수뇌평의회〉

제21조 공동체의 최고기관은 국가원수평의회이다.

가맹국이 최고위층의 대표를 보내는 국가원수평의회는, 가맹국의 이익이 일치하는 영역에 있어 가맹국의 활동에 관련되는 원칙적인 문제를 토의하고, 해결한다.

국가원수평의회는 1년에 2회 개최한다. 同평의회의 임시회의는 가맹국 중 한 나라의 제안으로 소집할 수 있다.

제22조 정부수뇌평의회는 경제, 사회 그 밖의 이익이 일치되는 분야에서 가맹국 집행권력기관의 협력을 조정한다.

정부수뇌평의회는 1년에 4회 개최한다. 同평의회의 임시회의는 가맹국 중 한 나라의 제안으로 소집할 수 있다.

제23조 국가원수평의회와 정부수뇌평의회의 결정은 전체의 합의에 의해 채택된다. 모든 국가가 어느 문제에 대해 자국과 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이 주장이 결정, 채택에 대한 장애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국가원수평의회와 정부수뇌평의회는 공동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국가원수평의회와 정부수뇌평의회의 활동규칙은 절차규칙에 의해

서 조정된다.

제24조 국가원수와 정부수뇌는 국가원수평의회와 정부수뇌평의회 회의에서, 공동체 가맹국의 명칭인 러시아어 알파벳순에 의해, 순서대로 의장의 임무를 맡는다.

국가원수평의회와 정부수뇌평의회 회의는 일반적으로 민스크市에서 개최된다.

제25조 국가원수평의회와 정부수뇌평의회는 상설 및 임시 실무기관과 보조기관을 설립한다.

이들 기관은 적합한 권한을 부여받은 가맹국의 대표에 의해서 구성된다.

이들 회의에는 전문가와 고문을 출석시킬 수 있다.

제26조 각각의 분야에서 협력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원수평의회와 정부수뇌평의회에 해당된 권고를 채택하기 위해 적합한 국가기관의 지도자회의가 소집된다.

〈외무장관평의회〉

제27조 외무장관평의회는 국가원수평의회와 정부수뇌평의회 결정에 근거하여, 국제조직에 있어 가맹국의 활동을 포함한 가맹국의 대외정책을 조정하고, 상호 이익에 관계되는 세계 정책상의 문제에 대해 협의를 실시한다.

외무장관평의회는 국가원수평의회가 승인한 규정에 의해 활동한다.

〈조정, 협의위원회〉

제28조 조정, 협의위원회는 공동체의 상설적 집행, 조정기관이다.

국가원수평의회와 정부수뇌평의회 결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同위원회는,

공동체기구 내에서의 협력문제, 사회경제관계의 발전문제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여 제출한다 ;

경제적 상호관계의 구체적인 분야에 관한 합의의 실현을 촉진한다 ;
국가원수평의회와 정부수뇌평의회 회의에 제출되는 문서의 초안을 준비하기 위해, 대표자와 전문가 회의를 개최한다 ;
국가원수평의회와 정부수뇌평의회 회의 개최를 보장한다 ;
공동체 외의 다른 기관의 활동을 지원한다.

제29조 조정, 협의위원회는, 각 공동체 가맹국이 각각 2인씩 파견한 권한을 보유하는 상임대표와 국가수뇌평의회에서 임명되는 위원회의 조정자로 구성된다.

국가원수평의회, 정부수뇌평의회 그 밖의 다른 공동체 각 기관의 활동을 조직적, 기술적으로 보증하기 위해, 조정, 협의위원회에는 同위원회의 조정자 — 조정, 협의위원회 부의장을 지도자로 하는 서기국이 설치된다.

위원회는 국가원수평의회가 승인한 규정에 따라서 활동한다.

위원회의 소재지는 민스크市로 한다.

<국방장관평의회, 합동군 총사령부>

제30조 국방장관평의회는 가맹국의 군사정책 및 군건설문제에 관한 국가원수평의회 기관이다.

합동군 총사령부는 합동군 및 공동체의 군사 오퍼서, 그룹과 평화유지집단군을 지도한다.

국방장관평의회와 합동군 총사령부는 국가원수평의회가 승인한 해당 규정에 근거해서 활동한다.

<국경 경비군 사령관평의회>

제31조 국경 경비군 사령관평의회는 가맹국의 대외국경 경비문제 및 대외국경에 있어서 안정된 상황의 보장문제에 관한 국가원수평의회 기관이다.

국경 경비군 사령관평의회는 국가원수평의회가 승인한 해당 규정에 근거해서 활동한다.

〈경제법원〉

제32조 경제법원은 공동체의 구조 속에서 경제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활동한다.

경제법원의 관할은 경제상의 의무이행에 있어서 발생할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同 법원은 가맹국 협정에 의해 그 관할이 된 다른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경제법원은 경제문제에 관한 공동체협정 및 그 밖의 법령에 있는 규정을 해석할 권한을 갖는다.

경제법원은 국가원수평의회가 승인한 경제법원의 지위에 관한 협정 및 그것에 관한 규정에 의해 활동한다.

경제법원의 소재지는 민스크市로 한다.

〈인권위원회〉

제33조 인권위원회는 공동체의 협의기관이며, 공동체기구 내에서 가맹국이 수용한 인권상의 의무이행을 감독한다.

위원회는 공동체 가맹국의 대표에 의해서 구성되며, 국가원수평의회가 승인한 규정에 따라 활동한다.

인권위원회의 소재지는 민스크市로 한다.

〈부문별 협력기관〉

제34조 경제, 사회 그 밖의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가맹국의 협정에 근거하여, 그러한 협력에 관한 통일원칙과 규칙을 채택하고, 그 구체적인 실현을 지원할 부문별 협력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부문별 협력기관(평의회, 위원회)은 해당부문에서 협력문제를 다국간 베이스로 검토하고, 해결하는 것을 보증하면서 본 헌장 및 본 헌장에 관한 규정에서 결정된 기능을 수행한다.

부문별 협력기관의 구성에는 당해 가맹국 권력집행기관의 지도자가 포함된다.

부문별 협력기관은 그 권한의 범위내에서 권고를 채택하고, 또 필요

한 경우에는 그 제안을 정부수뇌평의회로 검토를 상정한다.

〈공동체의 실무언어〉

제35조 공동체의 실무언어는 러시아어로 한다.

제 7 편 議會간의 協力

제36조 의회간 협력총회는 의회간 협의를 실시하고, 공동체의 구조 속에서 협력문제를 토의하고, 각국 의회의 활동영역에서 공동제안을 채택한다.

제37조 의회간 총회는 각국의 의회대표단에 의해서 구성된다.

의회대표단의 지도자에 의해서 구성되는 총회평의회가 회의간 총회의 활동을 조직한다.

회의간 총회의 활동에서 절차상의 문제는 그 의사규칙에 의해 규정된다

의회간 총회의 소재지는 상트 페테르부르크市로 한다.

제 8 편 資金提供

제38조 공동체 각 기관의 활동에 대한 자금제공에 따른 지출은 가맹국에 의해 분담되고, 공동체 각 기관의 예산에 관한 특별협정에 따라 실시된다.

공동체 각 기관의 예산은 정부수뇌평의회에 신청에 따라, 국가원수평의회가 승인한다.

제39조 공동체 각 기관의 재무, 운영에 관한 문제는 정부수뇌평의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검토된다.

제40조 가맹국은 그 대표, 전문가, 고문이 공동체 회의 및 각 기관의 활동에 참가할 때의 비용을 자국에서 부담한다.

제 9 편 終結規定

제41조 본 헌장은 설립국에 의하여 그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서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베라루시공화국 정부에 인도된다. 同國정부는 각국의 비준서가 보관을 위해서 인도되었음을 다른 설립국에게 통지한다.

본 헌장은 쏘설립국의 비준서가 보관을 위해서 인도되었을 때 쏘설립국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하며, 또한 본 헌장 채택 1년후에 자국의 비준서를 인도한 설립국에 대해서 발효한다.

제42조 모든 가맹국은 본 헌장의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제안된 개정안은 국가원수평의회의 절차규칙에 따라서 검토된다.

본 헌장의 개정은 국가원수평의회에 의해서 채택된다. 채택된 개정안은 쏘가맹국이 그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서 비준한 후, 베라루시공화국 정부가 최후의 비준서를 받은 날 발효한다.

제43조 공동체 설립국은 본 헌장 비준시, 그 제3편, 제4편, 제7편 및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에 관해 유보와 건의를 할 수 있다.

제44조 본 헌장은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의해서 등록한다.

제45조 본 헌장은 공동체 설립국의 국가언어로 1부가 작성된다. 원본은 베라루시공화국 정부의 문서 보관고에 보관된다. 同國정부는 쏘설립국에 그 증명된 복사본을 송부한다.

본 헌장은 1993년 1월 22일, 민스크市에서 국가원수평의회 회의로 채택되었다.

(참고자료 : ロシア 政策動向 (日本,東京) 1993.3.31.)

Ⅱ. 中華人民共和國 憲法 改正

〈해 설〉

1993년 3월 29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회의에서 헌법개정안이 통과되었는 바, 이것은 중국정치상의 하나의 큰 사건이라 할 수 있으며 중국식 사회주의의 강화로서 그 특징을 요약할 수 있다. 이번 개정헌법에서는 그 전문에 「우리나라는 바로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있다」, 「중국의 특색을 가지는 사회주의 이론을 정립한다」 및 「개혁개방을 견지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고도의 문명, 고도의 민주」를 「부유, 민주, 문명」으로 개정하였다. 중국의 특색을 갖는 사회주의 이론과 당의 기본노선은 중국의 지도적 지침이며 이것은 이번의 개정헌법에서도 핵심을 이루고 있다. 중국의 현행헌법인 '82년헌법'은 1988년 그 최초의 개정을 통해 법률에 따른 토지 사용권 양도를 규정함으로써 사영경제를 중국 경제체제의 일각으로 수용하였다. 그 개정을 통해 “어떠한 조직 또는 개인도 토지를 侵佔, 매매, 임대 또는 기타 형식으로 불법양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제10조 4항 全段의 규정에서 ‘임대’라는 귀절을 삭제함으로써 토지임대가 토지사용권의 양도의 형식으로 행하여 질 수 있음이 최초로 인정되었다. 한편, 이번 1993년 헌법개정은, 「중국에서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건설이 부단히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경제·사회적으로 커다란 변화가 발생하였으나 이것들이 헌법에 반영되어 있지 않았고 기존의 규정이 중국의 실제적 상황에 부합되지 않는다」라는 상황을 인식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중국식 사회주의의 실현방향을 더욱 구체화하고 있다. 이번 헌법개정은 1989년의 천안문사태와 동구사회주의국가 및 구소련의 개혁에 따라 중국 공산당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내외정세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과 1978년이후의 개혁·개방의 가속화에 따른 중국 경제체제의 변화에 대한 이론 정립과 그 방향설정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특히, 자본주의식 경제관리방법에 입각한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고수·운용을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개정된 내용>

前文에 “今後國家的根本任務是—— — 高度民主的社會主義國家”를 “우리나라는 바로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있다. 국가의 근본임무는 중국의 특색을 가진 사회주의를 건설한다는 이론에 근거하여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진행에 역량을 집중시키는 것이다. 중국의 각 종족의 인민은 계속하여 중국 공산당의 영도하에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모택동사상의 지도하에 人民民主專政을 견지하고, 사회주의 노선을 견지하고 개혁과 개방을 견지하고 부단히 사회주의 법제를 건설하고 자력갱생하며 어려움을 무릅쓰고 분투하고 공업, 농업, 국방 및 과학기술의 현대화를 한 걸음 한 걸음 실현하여 우리나라는 부강하고 민주적이고 문명적인 사회주의 국가로 건설할 것이다.”

前文 제10문 말미에 “중국 공산당이 영도하는 다당 합작과 정치협상 제도는 오랫동안 존재하고 발전할 것이다”를 추가한다.

제7조의 “國營經濟是—— — 發展”을 “국유경제, 즉 사회주의全民소유제 경제는 국가경제의 주도 역량이다. 국가는 국유경제의 공고함과 발전을 보장한다.”로 개정한다.

제8조의 1의 “農村人民公社，農業生產合作社和其他—— — 家庭副業和飼養自畜”을 책임제 및 생산, 공급판매, 신용, 소비 등 각종 형태의 합작경제는 사회주의 노동군중 집체소유제경제이다. 농업집체경제조직에 참가하는 노동자는 법률에 정한 범위내에서 自留地, 自留山, 가정부업 및 사육自留畜을 경영할 수 있다.”로 개정한다.

제15조의 “國家在社會主義—— — 保證國民經濟按比例地協助發展”，“禁止任何組織 —— — 破壞國家經濟計劃，”을 각각 “國家는 社會主義市場經濟를 실행한다.” “국가는 경제입법을 강화하고 완벽하게 거시적, 조정 통제한다.” “국가는 법에 의거하여 거대한 조직 또는 개인이 사회경제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을 금지한다.”로 개정한다.

제16조의 “國營企業在服從國家的統一—— — 有經營管理的自主權”，“國營企業依照法律規定 —— — 實行民主管理”를 “국유기업은 법률이 정한

범위내에서 자주적으로 경영하는 권리를 가진다.”, “국유기업은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노동자 대표대회 및 기타의 형식에 의하여 민주적인 관리를 실행한다.”로 개정한다.

제17조의 “集體經營組織在接受 --- --- 經濟活動的自主權”, “集體法律組織依照法律規定 --- --- 決定經營管理的重大問題.”를 “집체경제조직은 관련 법률을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독립적으로 경제활동을 진행하는 自主權을 가진다.”, “집체 경제조직은 민주적인 관리를 실행하고 법률 규정에 의거하여 관리인원을 선거하고 파면하며 경영관리의 중대한 문제를 결정한다.”로 개정한다.

제42조 3款의 “勞動是 --- --- 國家提倡社會主義 --- --- 國家提倡公民從事義務勞動”을 “노동은 노동능력이 있는 모든 인민의 영광된 직책이다. 국유기업과 城과 鄉의 집체 경제조직의 노동자들은 모두 국가의 주인이라는 태도로 자신의 노동에 임하여야 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노동경쟁을 제창하며 노동모범과 先進工作者를 장려한다. 국가는 공민의 의무적 노동에 종사하는 것을 제창한다.”로 개정한다.

제99조의 “省.直轄市 --- --- 三年”을 “省.直轄市.縣.市.市直轄區의 인민 대표대회는 임기 5년으로 한다. 鄉.民族鄉.鎮의 인민대표대회는 임기 3년으로 한다.”로 개정한다(法制日報 1993.3.31.).

제 2 부
외국입법동향

○ 분류기준표(러시아·동구·중국)

분 야	대한민국헌행법령집해당항목
憲 政	제1권1헌법, 2국회, 제2권3선거·정당
統一·外交·國防	제14권13군사(1), 제15권13군사(2), 14병무, 15국가보훈, 제47권44외무, 45조약(1), 제48권45조약(2), 제49권45조약(3)
內務·地方行政	제3권4행정일반, 제4권5국가공무원, 제10권10지방제도(1), 제11권10지방제도(2), 제12권11경찰, 제13권12민방위·소방
社會·文化·教育	제16권16교육·학술(1), 제17권17교육·학술(2), 제18권17문화·공보, 제38권38사회복지, 제40권40노동(1), 제41권40노동(2)
產 業·經 濟	제20권19재정·경제일반(1), 제21권19재정·경제일반(2), 제22권20내국세(1), 제23권20내국세(2), 제24권21관세, 22담배·인삼, 제25권23통화·국책·금융, 제30권28상업·무역·공업, 제31권29공업규격·계량, 30공업소유권, 제32권31에너지이용·광업, 제33권32전기·가스
農 林·水 産	제26권24농업(1), 제27권24농업(2), 제28권25축산, 26산림, 제29권27수산
建 設	제34권33국토개발·도시, 제35권34주택·건축·도로, 제36권35수자원·토지·건설업
科學技術·交通·遞信	제19권18과학·기술, 제42권41육운·항공·관광(1), 제43권41육운·항공·관광(2), 제44권42해운(1), 제45권42해운(2), 제46권43체신
環 境·保 健	제37권36공중위생·의사, 제38권37약사, 제39권39환경
法 院·法 務	제5권6법원, 제6권7법무, 제7권8민사법(1), 제8권민사법, 제9권9형사법

※ 유럽공동체는 유럽공동체의 분류기준에 따름.

I. 러시아 · 동구입법동향

1. 러시아

〈통일 · 외교 · 국방〉

○ 獨立國家共同體憲章

(공동체의 목적)

공동체가입국은 독립되고 평등한 국제법의 주체이며 공동체는 민족간의 화해와 협력, 상호이해에 공헌한다.

(헌장의 기본원칙)

국제법원칙과 유럽안보협력회의 문서에 근거하여 정책을 수립한다.

(상호협력분야)

인권의 보장, 외교활동보장, 운수통신발전, 환경보호, 사회정책, 조직범죄대책, 국방정책, 舊소련국경경비 등에 상호 협력한다.

(공동체가입자격)

1991년 12월의 독립국가 공동체 협정과 공동체 창설협정서의 조인국은 쏘가맹국의 동의, 공동체의 목적과 원칙인정, 본 헌장에 포함된 의무행을 요건으로 가입이 허용된다.

(준가입국과 옵서버)

준가입국의 자격으로 개별적인 협력분야에 참여할 수 있으며 옵서버의 자격도 인정한다.

(집단안전보장과 군사협력)

평화유지활동과 국경경비에 중점을 두며, 방위 및 가맹국 대외 국경의 경비문제에 관한 공동체의 최고기관은 국가원수평의회이고 군사협력의 조정은 국방장관평의회, 합동군 총사령부, 국경경비군 사령관 평의회에서 담당한다.

(분쟁의 방지와 해결)

가맹국은 민족간 및 종교간의 기본적인 인권침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

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조치를 강구하고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성실과 협력정신으로 공평하고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

(공동체의 조직)

국가원수평의회, 정부수뇌평의회, 외무장관평의회, 조정·협의위원회, 국방장관평의회, 국경경비군 사령관평의회, 인권위원회, 의회간협력총회 등을 둔다.

참고자료 : 러시아 政策動向 (日本,東京) 1993.3.31.

2. 헝가리

〈산업·경제〉

- 법인세에 관한 1992년 법률 제73호에 의해 개정된 1991년 법률 제 86호의 통합조항(Act L X X X VII of 1991 Consolidated Text of Amended by Act L X X III of 1992 on Corporate Tax)
 - 제1장 총칙, 납세의무, 과세대상, 해설규정, 제2장 과세평가기초, 손실의 한계, 회계에 관한 기타원칙, 제3장 과세평가, 세율, 세금감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금경감, 구조적 정책결정에 관련된 세금 경감, 세금감면의 대상이 되는 공공봉사·보건·문화 및 체육활동, 이중 과세의 방지, 세금의 계산, 제4장 절차원칙과 세금선납에 관한 원칙, 제5장 잠정규정, 제6장 종결규정 등을 내용으로함
- 소비세 및 소비자가격보조에 관한 1992년 법률 제71호에 의해 개정된 1991년 법률 제78호의 통합조항(Consolidated Text of Act L X X VIII of 1991, as Amended by Act L X X I of 1992 on Consumption Tax and Consumption Price Subsidy)
 - 제1장 총칙, 과세 및 가격보조의 대상, 제2장 소비세, 제3장 소비자가격보조, 제4장 절차에 관한 기타 규정 제5장 종결규정 등을 내용으로 함

○ 부가가치세에 관한 1992년 법률 제74호 (Act L X X IV of 1992 on Value Added Tax)

- 제1편, 제1장 영역적 범위, 인적 범위, 물적 범위, 제2장 납세자, 상업적 활동, 상품의 판매, 용역, 상품의 수입, 상품의 수출, 직접적으로 국제운송과 관련된 상품 및 용역의 판매, 제3장 상품판매의 경우 이행의 장소, 용역제공의 경우 이행의 장소, 제4장 상품판매 및 용역제공의 경우 납부의무의 발생, 상품수입의 경우 납부의무의 발생, 제5장 상품 및 용역제공의 경우 과세평가의 기초, 상품수입의 경우 과세평가의 기준, 제6장 세율, 제7장 상품판매 및 용역제공의 경우 과세면제, 수입상품의 경우 과세면제, 제8장 세금감경청구권의 내용과 세율, 세금감경청구권행사의 인적 조건, 세금감경청구권행사의 물적 조건, 세금감경청구권의 발생, 미리 부과된 세금의 분할, 유형자산과 관련하여 미리 부과된 세금의 분할, 제9장 상품의 판매 및 용역제공의 경우 납세자, 상품수입의 경우 납세자, 제10장 송장 발행의무, 과세목적에 위한 기록의 관리, 부가가치세의 확립, 세의 납부 및 환부, 제11장 과세주체의 세금면제, 제2편, 제12장 상업금융분야납세자에 대한 특별과세원칙, 제13장 농업분야납세자의 특별한 법적 지위, 농업분야납세자로부터의 구매, 제14장 소매업분야에 적용되는 특별과세방법, 제15장 중고품의 거래에 적용되는 특별과세원칙, 제16장 관관업분야에 적용되는 특별과세원칙, 제17장 통계의 분류, 환부할 수 없는 납부금, 신청에 의한 세금환부, 영수증발행의무, 제18장 권한의 위임, 효력의 발생과 잠정규정, 예외적 세금 재청구 등을 내용으로함.

〈과학기술 · 교통 · 체신〉

- 기업과 관련된 통신의 공표와 비용보상에 관한 명령 No.11/1991 (Decree No.11/1991(L X.4.)IM on Publishing and Cost Compensation of Communications Concerning Companies)

〈환경 · 보건〉

- 인간환경보호에 관한 1976년 법률 제2호 (Act II of 1976 on the

Protection of the Human Environment)

- 제1장 총칙, 제2장 환경보호의 범위, 토지의 보호, 수질보호, 대기의 보호, 생물의 보호, 자연경관의 보호, 지역환경의 보호, 제3장 환경보호관련규정위반에 대한 책임, 제4장 환경보호단체의 조직과 운영, 제5장 기타규정을 내용으로함
- 외국으로부터의 인간환경에 유해한 물질의 수입과 관련된 각료회의령 No.55/1987 (Decree of the Council of Ministers No.55/1987. (X.30)MT regarding the Importation from Abroad of Substances Dangerous to the Human Environment)
- 유독물질취급에 관한 명령 No.26/1985(Decree No.26/1985 (V.11.) MT on the Procedure in connection with the materials of poisonous effect)
- 유해폐기물의 생산과 처리에 관련된 활동의 규제에 관한 각료회의령 No.56/1981 (Decree of the Council of Ministers No.56/1981 (X I.18)MT on the Control of the Production of Dangerous Waste Materials and Activities Relation to their Destruction)
 - 총칙, 유해폐기물생산의 규제, 유해폐기물의 임시저장과 운반, 유해폐기물의 중화, 유해폐기물의 환경공해방지를 위해 채택되어야할 조치, 유해폐기물과 관련된 벌금, 종결규정 등을 내용으로함
- 소음 및 진동으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각료회의령 No.12/1983.(Decree No.12/1983.(V.12.)MT of the Council of Ministers on the Protection from Noise and Vibration)
 - 총칙, 지역개발과정에서의 소음과 진동으로부터의 보호에 관련된 필요시설의 강제, 새로운 시설의 설치에 관련된 소음방지필요시설, 현존 시설과 관련된 소음 및 진동의 방지에 필요한 시설의 지정, 특정산업 생산품에 적용되는 소음방지에 관련된 필요시설, 소음 및 진동방지강조지역, 정숙지역(Quiet zone), 소음억제보호지역, 벌금규정, 종결규정 등을 내용으로함

〈법원·법무〉

- 법원에 의한 기업의 등록과 기업의 적법성감독에 관한 명령 No.13/1989 (Decree No. 13/189(X I I.16.)IM on the Registration of Companies by Courts and the Supervision of Legality of Companies)
- 법원의 강제집행에 관한 법규명령 No.18(Law-decree No.18. of 1979 on Execution by the Court)
 - 제1장 기본규정, 법규명령의 목적, 일반원칙, 제2장 강제집행문서, 강제집행형식, 강제집행조항, 강제집행문서에 대한 법적 구제, 강제집행형식의 이용을 대신한 법원에 의한 직접압류, 강제집행조항의 이용을 대신한 법원에 의한 직접압류, 법원의 직접통지에 의한 생계비징수, 제3장 강제집행의 일반원칙, 강제집행의 착수, 비용, 판결문, 강제집행절차, 집달리의 결정과 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 강제집행의 유예, 강제집행의 종료 및 제한, 강제집행의 중지, 강제집행행사권의 기한경과, 제4장 급여 및 기타 수입에 대한 강제집행, 집달리에 의한 차압, 급여에서의 공제, 기타 수입에서의 공제, 소득압류와 관련된 고용자의 의무, 조합의 구성원에 대한 강제집행, 급여 및 기타 수입으로부터의 징수청구에 관련된 문서, 창작단체회원의 작품, 개인기업체, 기타 개인에 관련된 압류, 제5장 개인재산에 대한 강제압류, 강제집행의 일반원칙, 강제집행이 면제되는 재산품목, 가격평가, 일정품목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한 변칙, 압류된 개인재산의 관리, 몰수, 제3자 압류, 채권압류, 인도청구소송, 우선적 청구권의 고지, 경매, 개인재산 경매, 제6장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부동산 경매, 전세권에 대한 강제집행, 제7장 일정한 행위에 대한 강제집행, 일정한 동산의 인도, 구금 및 아동인계에 관한 결정의 강제집행, 주택에 관한 법원결정의 강제집행, 제8장 경제조직에 대한 강제집행, 제9장 강제집행과정에서 징수된 수입의 지급, 제10장 보전처분에 대한 강제집행, 현금보전청구, 몰수, 형사몰수, 제11장 종결규정, 법원집달리, 외국판결의 강제집행, 민사소송법의 적용, 효력발생일 등을 내용으로함.

* 참고자료 : Hungarian Rules of Law in Force (BUDAPEST, HUNGARY), 1993. 1월 15일~3월 15일

3. 체 코

* 체코슬로바키아연방공화국(CSFR)은 '92년 6월 실시된 총선에서 슬로바키아공화국의 연방으로부터 탈퇴를 주장하는 민주 슬로바키아운동이 슬로바키아공화국에서 제1당이 됨으로써 체코와 슬로바키아 양 공화국 首相은 연방의 解體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1993년 1월 1일부터 지난 74년간 지속되었던 체코슬로바키아연방공화국은 체코공화국과 슬로바키아공화국으로 分裂(disunion)을 이루었다. 그러나 체코와 슬로바키아 양 공화국은 연방해체에도 불구하고 각 공화국이 새로운 입법을 하지 않는 한 과거 체코슬로바키아연방에서 입법된 법률을 각국의 현행법률로 적용할 것임을 공표하였다. 따라서 체코공화국의 法制에 대한 소개는 슬로바키아공화국의 법제에 대한 이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외국법제동향분석」은 앞으로 체코의 法制動向을 자료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계속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헌 정>

○ 체코슬로바키아연방공화국의 분열을 결정하는 법률(By enacting on 25 November, 1992 the following Constitutional law, the Czechoslovak Federal Assembly decided on the Dissolution of the Czech and Slovak Federal Republic)

제1조 체코슬로바키아연방공화국은 1992년 12월 31일로 소멸하여 체코슬로바키아연방공화국의 승계국은 체코공화국과 슬로바키아공화국 임.

제2조 헌법과 기타 법률에 의해 체코슬로바키아연방공화국에 위임되었던 권한은 1993년 1월 1일부로 체코공화국과 슬로바키아공화국에 이전 됨.

제3조 체코슬로바키아연방공화국의 소멸과 함께 체코슬로바키아연방공화국의 국가기관, 군조직, 기타 연방정부의 예산통제 및 국가지원을 받는 기구도 소멸되며 체코공화국과 슬로바키아공화국은 체코슬로바키아연방공화국의 국가문장을 사용하지 않음,

제4조 체코공화국과 슬로바키아공화국에서 각각 실시된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에 의한 입법기관은 체코슬로바키아연방공화국의 연방의회의 입법권을 승계함,

제5조 체코슬로바키아연방공화국정부의 영토관할권은 체코공화국과 슬로바키아공화국 헌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1993년 1월 1일부터 체코공화국과 슬로바키아공화국정부가 각각의 영토에 대해 관할권을 보유함,

제6조 1·2항 체코슬로바키아연방공화국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할권은 체코공화국과 슬로바키아공화국 헌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1993년 1월 1일부터 체코공화국과 슬로바키아공화국대법원이 각각의 영역에 대해 관할권을 보유함,

제7조 체코국가평의회 및 슬로바키아국가평의회는 체코슬로바키아연방공화국의 소멸 이전이라도 1993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헌법 및 기타 법률을 제정할 수 있으며 제정된 헌법 및 기타 법률은 제2조에 따라 체코공화국과 슬로바키아공화국에 이전된 권한의 행사를 보장함,

제8조 1·2항 체코공화국과 슬로바키아공화국은 체코슬로바키아연방공화국의 소멸 이전이라도 조약이 체코슬로바키아공화국의 소멸 이후에 효력을 발생한다는 단서조항과 함께 체코와 슬로바키아연방공화국의 권한에 속하는 문제에 관련된 그들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조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으며 자신의 명의로 제3국과 국제조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체코슬로바키아연방공화국 소멸에 관련된 조치에 관한 헌법적 결정(A Constitutional Act concerning Measures related to the

Discontinuance of the Czech and Slovak Federal Republic)

- 제1조 1·2항 체코슬로바키아연방공화국이 소멸하는 날까지 체코공화국의 영역에 효력을 갖는 현행 체코슬로바키아연방공화국의 헌법적 결정, 법률, 기타 법규는 효력을 계속 유지한다. 그러나 오로지 체코슬로바키아연방공화국의 존재 및 체코공화국의 연방공화국으로서의 존재를 조건으로 하는 규정은 적용을 배제하며, 체코슬로바키아연방공화국의 소멸 이전에 승인된 체코슬로바키아연방공화국 및 연방공화국시민에게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는 헌법적 결정, 법률, 기타 법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체코공화국과 체코공화국시민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

제2조 체코슬로바키아연방공화국의 소멸 이전에 체코공화국이 공포한 법규와 제1조1항에 열거한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법규 사이에 저촉이 있는 경우에 체코공화국의 법규를 따름,

제3조 1·2·3항 체코슬로바키아연방공화국 연방의회 및 연방의회의장단의 권한과 연방정부의 권한 그리고 연방공화국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은 체코슬로바키아연방공화국의 소멸시에 제1조1항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체코국가평의회 및 평의회 의장단과 정부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에게 이양되고,

제3조 4항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제1조1항에 언급된 규정에 따라 체코슬로바키아연방공화국이 소멸한 날부터 체코슬로바키아연방공화국의 다른 국가기관을 대신할 체코공화국의 기관을 설립함,

제3조 5항 체코슬로바키아연방공화국이 소멸한 때로부터 체코슬로바키아대법원과 군검찰본부를 포함하는 체코슬로바키아대검찰청의 권한은 제1조1항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체코공화국대법원에 이양되며 체코슬로바키아의 지방군사법원 및 고등군사법원과 지방군사검찰부 및 고등군사검찰부의 지위는 동일한 지역적 관할범위를 갖고 동일 지역에 존재하는 새로이 설립되는 체코공화국의 지방군사법원과 지방군사검찰부 및 고등군사법원과 고등군사검찰부에 의해 대신하게

되며 제1조1항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권한이 이양됨.

제4조 체코슬로바키아연방공화국의 재산과 기타 권리 그리고 각종 공약은 연방의회의 헌법적 결정 또는 체코공화국과 슬로바키아공화국간의 조약에 의해 규정된 범위내에서 체코슬로바키아연방공화국이 소멸한 날로부터 체코공화국에 이전됨.

제5조 1·2항 체코공화국은 체코슬로바키아연방공화국이 소멸한 날까지 승인한 모든 국가와 정부를 승인하며, 체코공화국의 주권이 행사되는 지역에 대해 제기되는 제4조에 열거되지 않은 체코슬로바키아의 권리와 공약을 국제법에 따라 인수함.

제6조 이 헌법적 결정의 효력발생은 1992년 12월 31일부터로 함.

<통일·외교·국방>

- 연방해체에 대비한 체코공화국과 슬로바키아공화국간의 협정 -

○ 관세동맹협정 (Customs Union Agreement)

- 이 협정은 상품의 비과세 교류와 양국간의 분쟁해결을 위한 기구설립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양당사자의 어느 일방에 의한 협정위반의 경우 타방에 의한 일방적인 조치 또는 협정철회의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

○ 통화동맹협정 (Monetary Union Agreement)

- 통화동맹과정은 3단계로 나뉘어 진다. 첫단계는 1993년 6월 30일까지 동일한 통화보유를 규정하고 그 후 두번째 단계로 1대1 교환에 의한 은행권의 차별화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세번째 단계로 통화의 완전한 분리를 계획하고 있다. 각 단계는 어떤 시간적 제한에 의한 구속을 받지 않으며 그 기간은 각국 경제의 발전 정도에 의존한다.

○ 시민권협정 (Citizenship Agreement)

- 가장 많은 논란이 제기되었던 시민권문제를 체코는 새로운 체코공화국내에서 시민과 외국인의 완전한 분리와 외국인의 지위제도 도입을 통해 해결하였으며 슬로바키아정부는 이중적 시민권원칙을 도입하여

그 결과 체코의 국민은 슬로바키아의 시민권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 양 공화국간의 국경협정 (Agreement on Borders between the Republics)

- 체코공화국과 슬로바키아공화국간의 분명한 국경경계는 1994년까지 양 공화국 내무부장관에 의해 결정된다. 그 때까지 양국은 현재의 지역경계를 인정한다.

○ 고용협정 (Employment Agreement)

- 체코공화국영역내의 슬로바키아공화국 국민에게는 외국인의 지위가 적용되지만 그들의 근로허가요건 및 거주허가요건은 외국인에 대한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오랜 긴밀관계를 고려하여 시민권 분리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규정이다. 양국의 어느 한 국가의 시민은 다른 공화국에 거주하고자 할 때 단지 등록의무만을 이행하면 된다.

○ 사회보장협정 (Social Security Agreement)

- 슬로바키아공화국의 체코공화국시민과 체코공화국내의 슬로바키아공화국시민은 사회보장분야에 있어서 동등한 권리를 누린다.

○ 사영화협정 (Privatization Agreement)

- 제1차 사영화과동에 관한 시민의 청구권보호는 양 공화국내에 있어 시민의 권리보장이라는 방법으로 투자보호에 관한 협정에 규정한다.

○ 공중보건협정 (Public Health Agreement)

- 보건분야에 있어서 체코정부에 의한 슬로바키아에 대한 원조를 내용으로함.

○ 체코공화국과 슬로바키아공화국간의 선린·우호 및 협력에 관한 조약 (Agreement between the Czech Republic and the Slovak Republic on Good Neighbourly Relations, Friendship and Cooperation, 1992,11,23)

- <전 문> 체코공화국과 슬로바키아공화국(이하 체약당사국)은 양국공

동역사의 오랜 전통과 상호협력의 풍부한 경험을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유럽에 있어서 양국의 높은 위상을 확보하기 위한 결속의 필요를 인식하며, 인권과 기본적 자유, 민주주의의 원칙, 휴머니즘과 법치국가에 대한 양국의 분명한 평가를 확인하며, 자유의 기초와 정의 및 평화에 대한 확신에 따라 양국이 이를 준수하고 일관되게 이행할 것을 표명하고, 유럽에서의 중대한 정치적, 경제적 변화를 고려하고 유럽국가의 풍부한 경험을 이용하여, 국제법에 의거한 유럽의 평화, 안보, 민주주의 및 번영 뿐만 아니라 국제연합헌장, 헬싱키최종문서, 새로운 유럽을 위한 파리헌장과 기타 유럽안보협력회의의 문서에 구현된 목적과 원칙에 대한 확고한 결의, 상호관계의 전면적 발전과 선린정신에 따른 우호적 협력을 위한 노력 그리고 이미 체결된 협정과 협약에 표현된 현재의 협력관계에 의한 모든 적극적 결과를 유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제2조 체약 당사국은 상호간의 관계와 기타 제3국과의 관계에 있어 특히 국가평등, 영토보전과 정치적 독립성, 국경의 불가침 그리고 상대방 국가의 국내문제불가침 등 국제법의 원칙을 준수한다. 체약당사국은 당사국 공동의 국경을 확인하며 상호간에 상대방에 대한 영토적 청구권을 보유하지 않고 장래에 있어서도 그러한 청구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3조 체약 당사국은 양국관계의 발전을 확보하고 공동의 이익을 갖는 국제적 문제에 대해 가능한 한 양국의 입장을 조정하기 위해 양국 수상 및 각료급 등 다양한 차원의 정기적인 협의회를 개최하며 상호합의하에 필요에 따라 혼합위원회를 설립한다.;

제5조 체약 당사국은 다양한 차원에서 안보문제에 관한 정기적인 협의회를 개최한다. 만약 체약 당사국의 어느 일방이 국제정세의 흐름이 자국의 주권, 영토보전 또는 기타 중대한 안보사항에 위협을 주거나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신하는 경우 양 체약 당사국은 즉시 그 위협을 피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관해 협의를 시작한다. 어느 일방 당사국에 대한 무력적 공격이 발생한 경우에 다른 당사국은 국제연합헌장 제51조에 의

해 원조를 제공할 수 있음에 동의하며 그러한 무력충돌을 국제연합헌장과 유럽안전보장회의문서의 원칙에 따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제7조 체약 당사국은 양국의 도시 및 다양한 지방행정단위간의 협력을 지원한다. 체약 당사국은 또한 국회, 정당, 사회단체, 노동조합, 교회 및 종교단체, 각종 재단과 협회 및 조직 등의 밀접한 교류를 위한 여건형성에 노력하며 특히 청소년의 교류를 위한 모든 분야의 협력을 위해 기회를 제공한다.;

제8조 체약 당사국은 체코공화국내의 소수 슬로바키아인과 슬로바키아내의 소수 체코인에 대한 모든 인권을 보장한다. 양 당사국은 자국내의 소수 인종에 대해 국제적인 수준 특히 유럽의 수준에 따라 권리와 명예를 존중하여야 한다. 양 당사국은 자국내의 소수인종 구성원에게 적용되는 권리와 의무는 자국의 시민권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게 적용할 것임을 동의한다.;

제10·11조 체약 당사국은 사회진보의 기본적인 조건의 하나로써 경제적 협력의 발전을 고려하며 경제분야 전반에 걸친 상호협력을 확대·증진한다.;

제12조 체약 당사국은 환경보전분야에 있어서 긴밀히 협력하며 자국 국경을 벗어나는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노력하고 국제적 기준 특히 유럽기준에 따라 협동환경전략의 형성과 이행에 참여한다.;

제14·17·18조 체약 당사국은 상호간의 과학·기술·교육·보건·체육·관광분야의 협력을 증진한다.;

제19조 특별 협정을 체결하여 특히 조직범죄, 테러, 마약운송, 문화재 및 역사적 유물의 불법적 반출에 있어 사법분야의 협력을 증진한다.

〈내무·지방행정〉

○ 토지 및 재산등록법개정(법률 264/1992)

- 종래의 토지 및 재산등록법에 의하면 토지 및 재산등록에 관련된 다수

의 사례에 국가공증을 본질적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실질적 등록은 측량사무소에 하도록 되어 있는 이중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의 도입이 결정되었다. 1993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공증사무소의 사영화 및 그 기능 변화의 결과로서 법률 264/1992가 통과되었다. 동법은 국가공증사무소에 대한 등록 대신에 등기사무소에서 '부동산등기' 절차를 도입하였다. 이 절차는 재산 및 부동산에 관한 다른 권리에 관련된 법률 265/1992와 체코공화국에서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법률 344/1992에 의해 더욱 상세화되었다. 재산 및 부동산 분야의 법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상기의 법률들은 1993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였다.

〈법원·법무〉

○ 체코슬로바키아영토내의 외국인거주법 (Law on the Residence of Foreigners on CSFR Territory, Law No.123/1992)

- 체코슬로바키아영토내의 외국인 거주법은 1992년 10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였다. 외국인의 체코슬로바키아 입국·체류·출국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동법은 체코의 시민이 아닌 자를 외국인으로 간주하며 장기거주자와 단기거주자를 분류하고 있다. 비자가 필요하지 않은 외국인은 체코슬로바키아정부 또는 체코슬로바키아가 가입한 국제협정에 의해 규정된 기간 동안 체류가 허용되지만 이러한 단기체류는 180일을 넘지 못한다. 1년 기한의 장기체류외국인은 체류허가기한 종료 14일 이전에 체류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즉 장기체류는 체류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기간 만큼 허용되고 있다.

* 참고자료 : CZECH FOREIGN TRADE (PRAHA, CZECH REPUBLIC), 1992.11 ~ 1993.2.

Ⅱ. 중국입법동향

〈헌 정〉

○ 중화인민공화국헌법의 개정

-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회의에서 통과된 헌법개정안은 중국식 사회주의의 강화로 그 특징을 요약할 수 있다.

주요 개정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前文의 일부를 “— 국가의 근본임무는 중국의 특색을 가진 사회주의를 건설한다는 이론에 근거하여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진행에 역량을 집중시키는 것이다. —”로 개정하고 前文 제10문 말미에 “중국 공산당이 영도하는 다당 합작과 정치협상제도는 오랫동안 존재하고 발전할 것이다”를 추가한다.

제7조를 “국유경제, 즉 사회주의 쏘민소유제경제는 국가경제의 주도 역량이다.”로 개정한다.

제8조의 1을 “책임제 및 생산, 공급판매, 신용, 소비 등 각종 형태의 합작경제는 사회주의 노동군중 집체소유제경제이다. 농업집체경제조직에 참가하는 노동자는 법률에 정한 범위내에서 自留地, 自留山, 가정부업 및 사육自留畜을 경영할 수 있다.”로 개정한다.

제15조를 각각 “國家는 社會主義市場經濟를 실행한다.” “국가는 경제입법을 강화하고 완벽하게 거시적, 조정 통제한다.” 등으로 개정한다.

제16조를 “국유기업은 법률이 정한 범위내에서 자주적으로 경영하는 권리를 가진다.”, “국유기업은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노동자 대표대회 및 기타의 형식에 의하여 민주적인 관리를 실행한다.”로 개정한다.

제17조를 “집체경제조직은 관련 법률을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독립적으로 경제활동을 진행하는 自主權을 가진다.” 등으로 개정한다.

제42조 3款을 “— 국유기업과 城과 鄉의 집체경제조직의 노동자들

은 모두 국가의 주인이라는 태도로 자신의 노동에 임하여야 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노동경쟁을 제창하며 노동모범과 先進工作者를 장려한다. ---”로 개정한다.

제99조를 “省·直轄市·縣·市·市直轄區의 인민대표대회는 임기 5년으로 한다. 鄉·民族鄉·鎮의 인민대표대회는 임기 3년으로 한다.”로 개정한다(法制日報 1993.3.31.).

<내무·지방행정>

○ 澳門특별행정구기본법(1993.3.31.)

- 1999년 12월 20일 중국은 포르투갈로부터 주권을 회복하는 마카오를 특별행정구로 설치하여 기존의 자본주의체제를 최소한 50년간 인정하게 된다. 同法은 이를 위하여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澳門특별행정구가 고도의 자치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그 밖에도 주민의 기본적인 권리의무, 정치체제(행정장관, 행정기구, 입법기관, 사법기관, 시정기관, 공무원), 경제, 문화, 사회업무, 대외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法制日報, 1993.4.3.).

<산업·경제>

○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등록상표 위조범죄 처벌에 관한 보충규정(1993.2.22.)

- 상표위조 범죄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형법에 다음과 같은 보충규정을 둔다.

1. 등록상표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동일상품에서 그 등록상표와 같은 상표를 사용하여 그로 인한 소득이 비교적 크거나 기타 엄중한 정황인 경우에는 3년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강제노역(拘役)에 처하되 벌금형을 병과하거나 벌금형만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소득액이 대단히 큰 경우에는 3년이상 7년이하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위조상표의 상품의 판매상도 그 情을 명확히 안 경우도 이에 준하여 처벌된다.

2. 등록상표의 표식을 위조하거나 무단으로 제조한 자도 상기 제

1조에 준하여 처벌한다.

3. 기업사업단위에 상기의 죄를 범한 경우 당해 단위에 대해서는 벌금형에 처하고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 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을 지는 자는 상기 1-2조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받는다.

4. 국가공작인원이 직무를 이용하여 이 규정에 위배됨을 인지한 범죄행위를 한 기업단위 또는 개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도록 고의로 비호한 경우 형법 제188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는다(法制日報 1993.2.25., 人民日報 1993.2.25.).

○ 상품품질관리법(1993.2.22)

- 1992년 2월 22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의결된 상품품질관리법「中華人民共和國 產品質量法」은 상품의 품질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상품의 품질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상품의 품질을 감독·관리하기 위한 행정법규가 제정되기는 하였지만 중국의 경제체제개혁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여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다. 즉, 그러한 행정법규들은 품질의 사전감독관리를 중시하여 상품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한 사후구제를 경시하였다. 행정책임과 형사책임을 중시하고 민사책임을 등한시하였던 것이다. 또한 상품계약책임을 중시하고 상품으로 인하여 입은 권리침해에 대한 책임을 경시하였다. 이로 인하여 생산자와 판매자의 의무가 크게 경감되었고 상대적으로 소비자 보호측면이 약화되어 그러한 행정법규만으로는 불충분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1987년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회의에서 32인의 대표들이 새로운 품질관리입법을 제안하게 되었고 6년만에 동법이 제정되었던 것이다.

중국의 상품은 전체적으로 보아 그 품질이 조악하고 경제적 효율성도 낮아 1985년부터 1991년까지 국가품질관리기관에서의 상품샘플 품질검사합격률은 75% 전후, 그리고 시장에서의 상품샘플품질검사 합격률은 55-65%에 불과하였다. 이로 인하여 소비자들이 상품품질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매년 급증하여 왔으나 피해자가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지 못하고 제조업자 등도 응분의 처벌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상품품질관리법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생산자와 판매자가 同法の 규정에 의거하여 상품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제3조), 이를 위하여 인증된 표식, 우량품 표식 등 품질표시 또는 產地, 타인의 공장명칭·공장주소를 위조 또는 冒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제4조). 상품품질관리법이 위조상품을 제조·판매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형량을 높인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중국에서는 최근 수년동안 위조상품이 크게 늘어나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담배, 술, 식품, 농약, 약품, 화학비료, 종자, 사료, 농기계부속, 의복, 구두, 모자, 자전거, 자동차부품 등 위조상품은 거의 모든 분야에 미치고 있으며 이들 위조상품의 생산자 또는 판매자는 고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부당한 관측수단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일부 위조상품이 해외로까지 흘러 들어가고 있다. 이로 인하여 중국시장내에서 일부 우량상품이 축출되어 관련 기업의 이윤이 감소하고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고 중국 상품의 신용도가 해외에서 크게 떨어지는 등의 악영향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러한 폐해를 근절하기 위하여 위조상표의 생산·판매행위에 대한 형량을 크게 높였던 것이다.

한편, 국무원의 상품품질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전국적인 상품품질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국무원 관련 기관은 자신의 직무범위 내에서 상품의 품질에 대하여 감독관리하도록 하였다. 그밖에 판매자의 제조물 책임에 관한 규정과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法制日報, 1993.2.24.).

○ 상표법 (1993.2.22. 개정)

- 상표법의 개정된 내용중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제4조 1. “기업, 사업단위 및 민간(個體)공사업자는 자신이 생산·제조·가공·선택 또는 판매하는 상품에 대하여 독점적 상표사용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상표국에 상품 상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2. “기업, 사업단위 및 민간공사업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독점적 상표사용권을 취득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표국에

서비스 상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3. “이 법의 상품상표관련규정은 서비스상표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8조 2. 縣이상의 행정구역의 지명 또는 공지의 외국지명은 상표로 할 수 없다. 다만, 지명이 다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미 등록되어 사용되고 있는 지명의 상표는 계속하여 유효하다.

제12조 “동일한 신청인이 상이한 유형의 상품에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경우 상품분류표에 따라 그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 2. “타인의 등록상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등록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피허가인의 명칭과 상품產地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27조 1. “이미 등록된 상표가 이 법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또는 사기적인 수단 기타 부당한 수단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것인 경우, 상표국은 당해 상표등록을 취소한다. 다른 단위 또는 개인은 상표심사위원회에 당해 상표 등록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2. “전항에 규정된 경우 외에 이미 등록된 상표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당해 상표에 대한 등록허가일로부터 1년이내에 상표심사위원회에 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제29조 “상표심사위원회는 등록상표의 확인 또는 취소의 최종재정을 내린 후, 관련 당사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人民日報 1993.3.25.).

〈과학기술·교통·체신〉

- 중화인민공화국 선박·해상시설 檢査條例(1993.2.14.)
(法制日報, 1993.2.28.)

〈법원·법무〉

-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법(1993. 2. 22.)
- 국가안전법은 중국이 인민민주독재정권과 사회주의제도를 보호하고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제1조). 총 34개조로 구성된 이 법은 형법의 관련 조문을 구체화한 부분도 있으나 국가안전기관의 업무와 권한 그리고 국민의 국가안전유지의무 등이 중심적 내용이다(人民日報 1993.2.24., 法制日報1993.2.24.).

○ 未登記의 건물 賣買契約의 法的 效力

- 중국의 사법적 실천에 의하면 건물에 관한 이전 등기를 건물 매매계약의 효력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설령 당사자들이 건물매매에 대하여 서면의 계약을 체결하고 더 나아가 가옥과 그 대금의 교환이 이루어졌으며 동시에 다른 위법행위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건물에 관한 권리이전등기를 완료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매매계약은 효력이 없다. 이른바 “등기의 「계약효력요건설」이다. 이에 대하여 이설이 비록 중국의 사법적 실천에 의해 인정되고 있고 다수의 학자들이 지지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藍承烈은 다음 몇가지 이유를 들어 등기의 「계약효력요건설」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첫째, 민법의 기본원칙에 위배된다. 먼저, 「계약효력요건설」에 의하면 賣主가 부동산 권리이전등기를 하기 전에는 계약상의 권리·의무 관계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에 편승하여 賣主가 임의로 약속을 불이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pacta sunt servanda)라는 민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또한 약속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은 민법상의 기본원칙인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는 전제가 된다. 「계약효력요건설」은 賣主에게 임의로 약속을 파기할 자유와 권리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물매매가 다년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인 경우 賣主가 부동산 권리이전등기를 거부하고 買主에게 인상된 가격의 지불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매매관계를 해제할 것을 주장할 수도 있다. 「계약효력요건설」에 의하면 賣主의 이와 같은 신용을 지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위약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둘째, 「계약효력요건설」은 전통적인 민법이론에 배치된다. 전통적

인 민법이론에 의하면 건물 매매계약중에서 買主는 건물대금을 지불할 의무를 지고 賣主는 買主에게 건물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진다. 「계약효력요건설」은 賣主의 買主에 대한 건물소유권이전에 관한 계약상 의무를 매매계약의 성립요건으로 봄으로써 매매계약의 유효한 성립과 건물소유권 이전을 혼동하고 있다. 다음, 전통적인 민법이론에 의하면 物權이 對世權이며 불특정다수인에게 구속력을 가지며 따라서 物權의 설정 또는 변동은 적당한 방식으로 표시되어야 하는데 그로부터 물권법상의 公示原則이 형성되었다. 세계각국의 민법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부동산 변동등기제도는 주로 物權公示의 필요로부터 나온 것이며 채권계약의 효력과는 무관하다.

셋째, 「계약효력요건설」은 현행법의 규정에도 배치된다. 민법통칙은 부동산소유권은 「계약 또는 기타 합법적인 재산교부시에 이전되며 법률이 달리 규정하거나 당사자들이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城市私有 건물관리조례」도 「건물소유권이 이전되거나 建物現狀이 변경된 때에는 반드시 건물소재지 부동산 관리기관이 소유권이전 또는 建物現狀變更등기절차를 밟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규정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 현행법은 소유권변동에 대하여 형식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의사주의를 예외로 하는 입법례를 채택하고 있다. 부동산 소유권은 일반적으로 교부시에 이전되며, 형식주의를 원칙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당사자들이 달리 약정하거나 법률에 달리 규정한 경우가 아니면 의사주의를 예외로서 허용한다. 부동산 소유권이 등기한 때로부터 이전된다는 것은 형식주의 입법례에 속한다. 중국의 사법실천에 근거한 상기 조례의 관련규정이 등기를 부동산 매매계약의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오해인 듯하다.

이러한 근거에 따라서 藍承烈은 「민법통칙」과 「조례」등 현행법의 유관규정에 근거해 볼 때 등기는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 또는 변경의 효력이지만 부동산 매매계약의 효력요건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고 있다.

부동산 매매계약의 효력은 계약법 규정에 의거하여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등기의 효력은 당연히 부동산의 교부시까지 소급되며, 만약 매매계약이 성립되기 전에 買主가 부동산을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약발효시까지 소급된다. 부동산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후 賣主가 등기를 거부하는 경우, 買主는 賣主로 하여금 등기를 행하도록 命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賣主가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사람에게 매각한 경우, 부동산 이전등기를 한 상대방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며 기타 선의의 상대방은 계약법에 의거하여 賣主에게 목적물의 교부위반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부동산이전 등기절차가 완료된 후 계약의 무효임이 발견된 경우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취소하고 재산을 반환하여야 한다.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고 소유권이전 등기절차가 완료된 후 賣主가 부동산의 교부를 거부한 경우에는 買主는 賣主의 계약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소송절차를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 또는 권리침해에 관한 법규정에 의거하여 賣主의 위약 또는 권리침해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藍承烈, “登記不應是房屋賣買合同的有效條件”, 法制日報 1993.4.8.).

○ 중국중재제도의 국제화·현대화를 위한 제안

- 중국은 1954년 5월 政務院의 결정에 의거하여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내에 대외무역중재위원회를 설치하였다. 1978년 개혁개방추진이후 대외무역중재위원회의 활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으며 1986년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집행」에 관한 협약(뉴욕협약)에 가입하기로 결정하였고 1987년 4월 22일부터 중국에 대해 효력을 갖게 되었다. 同협약이 중국에 효력을 갖게 된 후 중국의 섭외중재기관이 내린 중재판정 중에서 10여건이 지금까지 미국, 캐나다, 이태리, 홍콩 및 일부 서구 국가 등에서 승인 또는 집행되었다.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는 국무원의 승인을 얻어 원래의 중재절차 잠정규칙을 토대로 하여 새로운 중재규칙을 제정하였는 바, 이 새로운 규칙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일부 관례를 수용하고 舊규칙의 일부조항을 개정, 보완하였다. 예컨대, 당사자의 상업적 신용과 명예 그리고 비밀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심리의 공개를 비공개로 바꾸었으며

중재판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재인회피제도를 규정하였다. 더 나아가서 중재사건이 “중국인의 손아귀에서 놀아난다.”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중재인이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가 지정한 중국밖의 인사 중에서 초빙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중재인 명부에는 홍콩 중재인 8인, 외국 중재인 6인(그중 해사중재인 1인)이 포함되어 있으며 향후 점차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외국중재인을 중국 중재기관이 중재인으로 초빙하는 것은 큰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중국의 상사중재는 완전한 현대화, 국제화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최근 중국에서 당사자 쌍방이 외국인인 분쟁사건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는 결코 많지 않다. 뿐만 아니라, 분쟁가액이 1,000만달러 이상인 큰 사건에 대하여는 수리된 경우가 극히 적거나 아예 수리되지도 않았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의 중재가 아직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필자는 중국의 중재제도의 국제화, 현대화를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부분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첫째, 특별(ad hoc)중재의 법적 지위이다. 국제상사중재는 일반적으로 특별중재와 상설중재기구에 의한 중재로 분류된다. 중국의 현행 중재규칙은 상설중재기구에 의한 중재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특별중재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중국도 참가하고 있는 1958년 뉴욕협약은 특별중재를 먼저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중재의 중국에서의 법적 지위를 확인하는 것은 중국중재제도의 국제화 필요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중국이 국제조약의무를 충실히 이행한다는 표현이기도 하다.

둘째, 당사자들이 합의한 중재규칙의 적용문제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중재규칙은 당사자가 중국의 섭외중재기구에서 중재할 경우 그 절차는 당해 중재기구가 정한 중재규칙을 적용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일반화된 방식은 당사자의 의사자치를 허용한다는 원칙에서 출발하여 쌍방 당사자의 중재규칙선택을 존중한다. 당사자들은 분쟁을 어떠한 국가의 중재기구의 중재에 회부할 수 있으며 이 때에도 당해 중재기구로 하여금 자신들이 선택한 중재규칙을 적용하도록 요

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중재규칙은 당해 중재기구의 중재규칙일 수도 있고 다른 국가 또는 다른 중재기구의 중재규칙일 수도 있다. 1985년 국제연합에서 채택된 「국제상사중재모델법」 제19조 제1항도 그와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세째, 중재인 선택범위를 확대하여 당사자들이 중국 중재인 명부의 인사를 중재인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중재인의 선택에 대하여 국제적으로는 두가지 관례가 있다. 그 하나는 중재기구가 중재인 명부를 제공하지 않고 당사자들이 어떠한 사람도 일정한 자격이 있는 한 중재인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중재기구가 제공하는 중재인 명부에서 당사자들이 적당한 중재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많은 국가에서 당사자들이 중재인 명부에서 중재인을 선택하는 외에 중재인 명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자를 중재인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중국은 선택될 수 있는 중재인을 중재인 명부에 등재된 자로 국한시킴으로써 당사자들의 중재인 선택자유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姚壯, “向現代化國際化邁進的我國國際商事仲裁”, 法制日報 1993. 3.7.).

Ⅲ. 유럽공동체(EC)입법동향

1. 유럽공동체입법

〈농업〉

○ 위원회 지침 92/99(92.11.17)

- 사료의 첨가물에 관한 이사회 지침 70/524 부록을 개정

○ 이사회 규칙(EEC) 3508/92(92.11.27)

- 특정 공동체지원계획(Community aid schemes)을 위한 종합 행정, 통제체계를 구축

- 이사회 결정(EEC) 92/563(92.11.19)
 - SHIFT사업에서 구상하는 공동체의 수입요건을 망라하는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결정
- 이사회 규칙(EEC) 3813/92(92.12.28)
 - 공동 농업정책의 목적으로 적용될 회계단위와 환산율에 관한 규칙
- 위원회 규칙(EEC) 3819/92(92.12.28)
 - 농업환산율의 결정, 적용에 있어서의 세목에 관한 규칙
- 이사회 규칙(EEC) 3950/92(92.12.28)
 - 우유 및 유제품 부문에 추가과세 설정
- 위원회 규칙(EEC) 3945/92(92.12.22)
 - 수출상환금(Export Refunds)의 결정을 위한 농업생산품 명명법을 제정한 규칙 3846/92의 부록을 개정
- 이사회 규칙(EEC) 125/93(93.1.18)
 - 쇠고기, 송아지고기 시장에서의 공동기구에 관한 규칙 805/68의 개정
- 위원회 규칙(EEC) 334/93(93.2.15)
 - 인간이나 동물의 소비를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동체내 생산품 제조 공장에 물품을 공급하기 위해 따로 확보한 토지의 사용을 실행할 세칙 규정
- 이사회 규칙(EEC) 404/93(93.2.13)
 - 바나나시장의 공동기구에 관한 규칙

〈반덤핑〉

- 이사회 규칙(EEC) 3482/92(92.11.30)
 - 일본을 원산지로 하는 대전해질 알루미늄 축전지의 특정 수입품에 대한 확정 반덤핑관세의 부과 및 잠정적인 반덤핑관세의 확정적인 징수
- 이사회 규칙(EEC) 3498/92(92.11.30)
 - 홍콩을 원산지로 하는 비디오 카세트의 특정 수입품에 대해 확정 반덤핑관세를 고려, 규칙 1768/89를 개정
- 이사회 규칙(EEC) 3642/92(92.12.14)
 - 폴란드와 이집트를 원산지로 하는 ferrosilicon 수입품에 대한 확정

반덤핑관세의 부과 및 잠정적 반덤핑관세의 확정적 징수로의 권한 부여

○ 위원회 결정 92/572(92.12.14)

- 폴란드와 이집트産 ferrosilicon 수입품에 관한 반덤핑절차와 관련하여 폴란드 생산자의 책임인수(undertaking)를 인정

○ 이사회 규칙(EEC) 53/93(93.1.8)

- 한국産 특정유형의 전자초소형 집적회로(DRAMs) 수입품에 대한 잠정 반덤핑관세의 연장

○ 이사회 규칙(EEC) 54/93(93.1.8)

- 인도와 한국産 합성폴리에스테르섬유 수입품에 대한 확정관세 부과

○ 이사회 규칙(EEC) 55/93(93.1.8)

- 일본産 끝이 뾰족한 롤러베어링의 외측링 수입품에 대한 확정관세 부과

○ 이사회 규칙(EEC) 104/93(93.1.18)

- 중국産 완전연소(Deadburned) 마그네시아 수입품에 대한 잠정적인 반덤핑관세의 연장

<경쟁>

○ 위원회 결정 92/553(92.7.22)

- 규칙 4064/89(판례 IV/M.190 - Nestle/Perrier)下的 절차와 관련

○ 위원회 결정 92/568(92.11.25)

- EEC 85조(IV/33.585 - 여행업자에 의한 철도티켓의 판매) 下的 절차와 관련

○ 위원회 규칙(EEC) 3618/92(92.12.15)

- 보험분야에 있어서 특정 범주의 계약, 결정, 공동행위 등에서의 EEC 85(3)조의 적용

○ 위원회 결정 93/3(92.12.4)

- Lloyd 보험업자 협회와 런던 보험업자기구와의 사이에 체결된 경쟁 제한적 계약이 유럽공동체조약 제85조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관한 결정

- 위원회 결정 93/9(92.9.30)
 - 경제력 집중과 공동시장과의 양립성에 관한 결정
- 위원회 결정 93/46(92.12.15)
 - EEC 85조항(IV/31.400 - Ford 농업 - 선택적 분배)과 관련
- 위원회 결정 93.47(92.12.17)
 - 규칙 4056/86의 19조항(IV/32.447 - 서아프리카 정기항공기회의)에 따라 벌금을 부과
- 위원회 결정 93/48(92.12.21)
 - EEC 85조(IV/33.031 - FLAT/HITACHI - 합작사업)에 관련
- 위원회 결정 93/49(92.12.23)
 - EEC 85조(IV/33.814 - Ford/ Volkswagen - 합작사업)에 관련
- 위원회 결정 93/50(92.12.23)
 - EEC 85조(IV/32.745 - ASTRA - 경쟁 제한적 계약)에 관련
- 위원회 규칙(EEC) 151/93(92.12.23)
 - 공동체조약 제85조를 전문화계약, 연구개발계약, 특허발명실시 계약, 노하우사용 허락계약에 적용하기 위하여 마련된 공동체 규칙 (417/85, 418/85, 2349/84, 556/89)을 개정
- 위원회 결정 93/82(92.12.23)
 - 85조(IV/32.448과 IV/32.450 : Cewal, Cowac 그리고 Ukwal)와 86조(IV/32.448 IV/32.450 :Cewal) (정기선<정기항공기>회의들)에 따른 진행과 관련한 결정

〈소비자 보호〉

- 이사회 규칙(EEC) 339/93(93.2.8)
 - 제3국 수입품에 대한 제품안전규정의 준수여부 검사에 관한 규칙

〈문 화〉

- 이사회 규칙(EEC) 3911/92(92.12.9)
 - 문화상품의 수출에 관련

〈관 세〉

- 위원회 규칙(EEC) 3566/92(92.12.8)
 - 상품의 용도와 (또는) 목적지(destination)의 증명을 요구하는 공동체 법령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서류에 관한 규정
- 위원회 결정 92/571(92.12.5)
 - 지침 90/675에 규정된 수의검역(가축검역 : veterinary checks)체계의 전환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새로운 과도적 규정에 관한 결정
- 위원회 규칙(EEC) 3710/92(92.12.21)
 - 대내적 처분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 생산품의 이전을 위한 절차를 제정하는 이사회 규칙
- 이사회 규칙(EEC) 3904/92(92.12.17)
 - 세관(대리인)직의 역내시장에의 적용을 위한 규정
- 위원회 규칙(EEC) 3649/92(92.12.17)
 - 발송지 회원국內에서의 소비를 위하여 판매되고 물품세(국내 소비세)가 부과된 생산품의 공동체內에서의 이동을 위한 간이 부속서류에 관한 규정
- 이사회 지침 92/108(92.12.14)
 - 물품세(국내 소비세)의 적용을 받는 생산품에 대한 일반협정과 그러한 생산품의 보유, 이동, 추적에 관한 지침 92/12의 개정 및 지침 92/81의 개정
- EEC/EFTA 공동통과에 관한 합동위원회(Joint Committee on Common Transit) 결정(92.9.19)
 - 공동통과 절차(Common Transit Procedure)에 관한 1987.5.20의 협약 부록 I의 수정
- EEC/EFTA 공동통과에 관한 합동위원회 결정(92.9.19)
 - 공동통과 절차에 관한 1987.5.20 협약 부록 II의 수정
- 위원회 결정 93/13(92.12.22)
 - 제3국 생산품 공동체 국경검사소에서의 수의검역(Veterinary Checks)절차를 규정

○ 위원회 결정 93/14(92.12.23)

- 제3국으로부터 공동체를 경유, 다른 제3국으로 운송중이거나 자유무역항, 면세창고, 관세창고에 있는 제3국 생산품에 대한 수의검역방법을 규정

○ 위원회 결정 93/15(92.12.16)

- 통과절차와 잠정적 수입 및 내부처분과 관련한 관세관리(세관원)의 직업훈련을 위한 특별 공동프로그램의 마련

〈환 경〉

○ 이사회 규칙(EEC) 3952/92(92.12.30)

-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의 단계적 제거를 가속화하기 위해 규칙(EEC) 594/91을 개정

○ 이사회 지침 92/112(92.12.15)

- 이산화티타늄공장 폐기물로 야기되는 공해를 감소, 종식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의 조화를 위한 절차

○ 이사회 규칙(EEC) 259/93(93.2.1)

- EC내에서, EC내로, 밖으로의 폐기물 선적에 관한 감독과 통제

○ 이사회 결정 93/98(93.2.1)

- 위험폐기물의 국경횡단이동, 처리에 관한 통제협약(Basel 협약)

○ 이사회 결정 93/114(93.2.15)

- 독일, 체코슬로바키아, EEC간의 엘베강 보호를 위한 국제위원회협약의 의정서 체결

〈유럽 핵에너지공동체〉

○ 이사회 결정 92/547(92.11.16)

- Kernkraftwerk Lingen GmbH의 합작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연장

○ 위원회 결정 93/95(93.2.2)

- 합작연구센터의 재조직에 대한 결정 85/593을 수정

〈유럽 석탄·철강공동체〉

○ 위원회 결정 3641/92(92.11.24)

- 결정 1566/86부록의 철강의 통계에 관한 설문양식(questionnaires)
개정

<유럽공동체>

- 회원국 정부대표들의 공동합의에 의한 결정(92.12.12)
 - 유럽공동체의 기관들과 특정 부서들의 물리적 위치에 관한 결정
- 덴마크 협정과 유럽조약(the Treaty on European Union)
- 유럽공동체 회원국 정부대표들의 결정(92.12.21)
 - EC위원회 회원을 임명
- 유럽공동체 회원국 정부대표들의 결정(92.12.21)
 - EC위원회 회장을 임명

<금융 서비스(Financial Service)>

- 이사회 지침 92/96(92.11.10)
 - 직접 생명보험과 관련한 법률, 규칙, 행정적 규정들의 조정 및 지침 79/267, 90/619(생명보험에 관한 제3차 지침)의 개정
- 위원회 규칙(EEC) 3932/92(92.12.21)
 - EEC 85(3) 조항을 보험영역상의 특정범주의 협정, 결정, 공동행위 등에 적용
- 이사회 지침 92/121(92.12.21)
 - 신용기관의 대규모 위험 인수(Large Exposures)에 대한 감시 및 통제

<어업>

- 이사회 규칙(EEC) 3759/92(92.12.17)
 - 수산물과 양식품 시장에 관한 공동기구
- 이사회 규칙(EEC) 3760/92(92.12.20)
 - 수산업과 양식업에 대한 공동체 체계의 설치

<식료품>

- 이사회 지침 92/110(92.12.14)

- 다진 육류, 100그램 미만 육편(肉片)의 생산과 거래, 육류의 조리 등에 대한 요건을 규정한 지침 88/657을 개정
- 위원회 지침 92/107(92.12.11)
 - 기름, 섬유식물의 種子판매에 관한 지침 69/208을 개정
- 위원회 지침 92/113(92.12.16)
 - 식료품 및 식품 양념류의 생산에 쓰이는 추출용제(솔벤트)에 관한 각 회원국의 법률간의 조화를 규정한 이사회 지침 88/344을 최초로 개정
- 이사회 결정 92/608(92.11.14)
 - 곧바로 사람이 소비하도록 열가공처리된 우유의 분석, 검사방안을 규정
- 이사회 규칙(EEC) 315/93(93.2.8)
 - 식품오염물질에 대한 공동체 절차 규정

〈대외 관계〉

- 이사회 결정 92/542(92.11.23)
 -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에 대한 中期의 재정원조 제공
- 이사회 결정 92/548(92.11.16)
 - EEC와 모로코간 재정적, 기술적 협력 의정서의 체결
- 이사회 결정 92/549(92.11.16)
 - EC와 시리아간 재정적, 기술적 협력 의정서의 체결
- 이사회 결정 92/551(92.11.27)
 - 루마니아에 대한 中期의 추가적 재정지원 제공
- 이사회 규칙(EEC) 3541/92(92.12.7)
 -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661(1990) 및 관련 결의들에 의하여 그 이행이 영향을 받게된 제반 계약, 거래와 관련한 이라크의 청구에 대한 辨濟를 禁止함
- 이사회 결정 93/115(93.2.15)
 - 공동체의 공동이익을 위한 제3국에의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의 借款으로 인한 損失에 대하여 공동체가 보증을 제공함

<자본의 자유이동>

○ 이사회 지침 92/122(92.12.21)

- 지침 88/361의 제6조(2)항에 따라 그리이스로 하여금 특정 자본이동의 자유화를 연기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

<지적 소유권>

○ 이사회 결정 93/16(92.12.21)

- 미국 및 특정 영역의 국적을 가진 者에게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 (Topographies of Semiconductor Products)의 법적 보호를 확대함

○ 이사회 결정 93/17(92.12.21)

- 특정 국가 또는 영역의 국적을 가진 者에게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의 법적보호 확대를 규정한 결정 90/510을 개정

<역내시장>

○ 위원회 결정 93/72(92.12.23)

- 역내시장부문에서의 협력을 위한 자문위원회 설치에 관한 결정

<국제 무역>

○ 이사회內 회원국 정부회의 결정 92/555(92.12.7)

- ECSC(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와 세르비아간의 무역을 금지한 결정 92/285를 개정

○ 이사회 결정 92/561(92.12.27)

- EC와 산마리노공화국간의 무역 및 관세동맹에 관한 잠정적 협정의 체결

○ 이사회 규칙(EEC) 3576/92(92.12.7)

- 공동체가 제3국에 부여하는 특혜관세제도를 운용함에 있어서 특정 공산품과 화학 또는 관련산업 생산품에 대해 적용할 “원산품(Originating Products)”의 개념 정의

○ 이사회 규칙(EEC) 3637/92(92.11.27)

- 회원국에 등록되고 오스트리아를 경유하는 적재량 7.5톤 이상의 重産品 운송차량에 대한 통행권(Ecopoints)의 분배 체계
- 이사회 결정 92/577(92.11.27)
 - EC와 오스트리아간 도로, 철도에 의한 상품운송 협정체결
- 이사회 결정 92/578(92.11.27)
 - EC와 스위스간 도로, 철도에 의한 상품운송 협정체결
- 이사회 결정 92/580(92.11.13)
 - 국제설탕협약의 조인과 체결
- 이사회 규칙(EEC) 3913/92(92.12.17)
 - 특정 농산물 및 공산품에 대한 공동체 관세 할당분의 관리행정을 개설, 규정
- 이사회 규칙(EEC) 3915/92(92.12.17)
 - 특정 농, 공산품에 대한 GATT에 규정된 공동체 관세 할당분의 관리행정을 개설, 규정
- 이사회 규칙(EEC) 3917/92(92.12.21)
 - 개발도상국이 원산지인 특정 생산품과 관련한 일부 일반화 특혜관세 적용규정을 1993년까지 연장
- 이사회 규칙(EEC) 3918/92(92.12.28)
 - 특정 농, 공산품에 대한 공동체 관세 할당분, 상한치의 관리행정 개설, 규정 및 헝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박공화국 원산지인 특정 가공처리된 농산물에 대한 감소된 가변요소의 설정
- 이사회 결정 92/611(92.12.7)
 - EEC, ECSC, 체코, 슬로박공화국간의 내부거래의 연장에 관련
- 이사회결정 92/612(92.12.7)
 - EEC, ECSC, 폴란드간의 내부거래 연장
- 이사회 결정 92/613(92.12.7)
 - EEC, ECSC, 헝가리간의 내부거래 연장
- 이사회 규칙(EEC) 3951/92(92.12.29)
 - 보스니아 - 헤르체코비나,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마케도니아産 생산품의 공동체내로의 수입에 적용가능한 조치에 관한 규칙

- 이사회 규칙(EEC) 3951/92(92.12.29)
 - 타이완産 특정 직물의 수입에 대한 조치 규정
- 이사회 결정 92/606(92.12.30)
 - EEC와 방글라데시간 식물무역에 대한 개정협약체결을 승인
- 이사회 결정 92/605(92.12.14)
 - EEC와 모로코간 무역 및 협력 협약체결에 관한 결정
- 이사회 결정 92/601(92.12.21)
 - EEC와 에스토니아간 무역 및 경제, 통상협력에 관한 협약체결에 관한 결정
- 이사회 결정 92/602(92.12.21)
 - EEC와 라트비아간 무역 및 경제, 통상협력에 관한 협약체결에 관한 결정
- 이사회 결정 92/603(92.12.21)
 - EEC와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 리투아니아간의 무역 및 경제, 통상협력협약체결에 관한 결정
- 이사회 결정 93/97(93.2.9)
 - 식물국제무역에 관한 조치의 효력지속을 위한 의정서 체결
- 이사회 결정 93/101(93.2.8)]
 - EEC와 몽골리아간 무역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체결
- 이사회 결정 93/112(92.12.14)
 - 정부지원 수출신용분야에서의 특정 기준의 적용을 규정한 1978.4.4 결정을 연장(확대)

<자동차>

- 이사회 지침 92/97(92.11.10)
 - 자동차의 허용소음도와 배기장치에 관련한 회원국 법률의 調和 (Approximation)에 관한 지침 70/157의 개정

<동·식물 보건>

- 이사회 지침 92/98(92.11.16)

- 식물과 식물상품에 유해한 유기체의 공동체내로의 반입, 확산을 금지하는 보호규정에 관한 지침 77/93의 부록 V를 개정
- 이사회 지침 92/103(92.12.1)
 - 식물과 식물상품에 유해한 유기체의 공동체내로의 반입, 확산을 금지하는 보호규정에 관한 지침 77/93의 부록 I - IV를 개정
- 이사회 지침 92/102(92.11.27)
 - 동물의 등록과 신원증명제도에 관한 지침
- 위원회 결정 92/562(92.11.17)
 - 高危險物質처리를 위한 대체적 열처리체계의 승인
- 위원회 규칙(EEC) 3600/92(92.12.11)
 - 식물보호제품의 시판에 관한 지침 92/414의 8(2)조항에 언급된 작업 프로그램의 1단계를 수행하기 위한 세목을 규정
- 이사회 결정 92/583(92.12.14)
 - 사육목적 보유동물보호를 위한 유럽협약의 개정의정서 체결
- 위원회 규칙 92/105(92.12.3)
 - 특정 식물, 식물 생산품, 기타 물건들의 공동체내 이동에 사용될 식물 여권(Plant Passports)의 표준화 기준을 설정
- 위원회 결정 93/4(92.12.9)
 - 특정 부수서류의 송달제한시간에 관한 결정 91/426을 개정
- 위원회 결정 93/22(92.12.11)
 - 水生동물, 수산물시장에의 출하를 좌우하는 동물의 건강상태에 관한 지침 91/67 14조항에 언급된 이동서류(Movement Documents)의 모델을 규정
- 위원회 결정 93/83(92.12.22)
 - 제3국으로부터의 생산품, 동물에 대한 수의검역을 위해 이미 선정된 국경검역소의 목록을 작성한 위원회 결정 92/430과 92/431을 개정

<공중 보건>

- 이사회 지침 92/109(92.12.14)
 - 마취제와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제조에 쓰이는 특정물질의 제조와 시

판에 관한 지침

○ 위원회 지침 92/69(92.7.31)

- 위험물질의 분류, 포장, 분류표시(레테르) 부착 등과 관련한 법률, 규칙, 행정규정 등의 調和에 대한 지침 67/548을 기술적 진보에 적용시킴

○ 이사회 규칙(EEC) 302/93

- 유럽 마약, 마약중독 감시센터의 설립

〈정부 조달〉

○ 이사회 지침 93/4(93.2.8)

- 정부의 공공사업계약의 체결을 위한 절차의 조화에 관한 지침

〈도로 교통〉

○ 이사회 지침 92/114(92.12.17)

- N 범주에 속하는 자동차의 택시 후면의 외부적 처리에 관한 지침

〈사회 보장〉

○ 이사회 규칙(EEC) 1408/71(91.6.14)의 통합

- 공동체내에서 이동하는 피고용인, 自營業者 및 그들 가족에 대한 사회 보장제도의 적용

○ 이사회 규칙(EEC) 574/72(72.3.21)의 통합

- 공동체내에서 이동하는 피고용인, 自營業者 및 그들 가족에 대한 사회 보장제도의 적용을 규정한 이사회 규칙 1408/71을 실행할 절차를 규정

〈사회 정책〉

○ 이사회 규칙(EEC) 3949/92(92.12.21)

- 산업과 서비스 분야에서의 노동임금(Labour Costs)조사 체계화와 관련

○ 위원회 결정 93/12(92.12.9)

- 모집, 안정화, 고용보험료 등의 비용 지출에 대한 유럽사회보장기금(European Social Fund)의 보조금 지급비율의 결정

〈직장에서의 보건과 안전〉

○ 이사회 지침 92/104(92.12.3)

- 지표, 지하 광물채굴산업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보호개선을 위한 최소기준과 관련된 지침

〈국가 원조〉

○ 위원회 결정 92/569(92.7.31)

- 독일이 제안한 중국선박회사 Cosco의 컨테이너 선박제조에 대한 원조와 관련

〈통 계〉

○ 위원회 규칙(EEC) 3590/92(92.12.11)

- 회원국간 무역통계에 필요한 통계적 정보매체와 관련

○ 위원회 결정 3641/92(92.11.24)

- 철제와 강철(Iron and Steel) 통계에 대한 결정 1566/86의 부록에 수록된 설문양식(Questionnaires)의 수정

〈세 제〉

○ 이사회 결정 92/543(92.11.23)

- 판매세(Turnover Taxes)관련 회원국 법률의 조화를 도모한 제6차 지침 77/388의 13 B(d) (1) - (2)조항과 관련하여 볼 때 2(1) 조항에 반하는 국내 법령을 적용할 수 있게끔 독일연방공화국에 권한 부여

○ 이사회 결정 92/544(92.11.23)

- 판매세와 관련한 회원국 법률의 조화를 도모한 제6차 지침 77/388의 17조와 2(3) - (5)조항에 반하는 내용의 국내 법령을 적용할 수 있게끔 프랑스공화국에 권한 부여

○ 이사회 결정 92/545(92.11.23)

- 판매세와 관련 회원국법률의 조화를 도모한 제6차 지침 77/388의 21조에 반하는 내용의 국내 법령을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을 네덜란드에 부여

- 이사회 결정 92/546(92.11.23)
 - 판매세와 관련 회원국법률의 조화를 도모한 제6차 지침 77/388의 28e(1)조항에 반하는 내용의 국내 법령을 적용할 권한을 영국에 위임
- 이사회 지침 92/111(92.12.14)
 - 지침 77/388을 개정하고 부가가치세(VAT)와 관련한 간소화 방안 도입
- 이사회 결정 93/109(93.2.15)
 - 제6차 부가가치세(VAT)지침 17조에 반하는 국내법령의 적용을 연장할 권한을 프랑스에 부여
- 이사회 결정 93/110(93.2.15)
 - 제6차 부가가치세(VAT)지침 2조에 반하는 국내법령의 적용을 연장할 권한을 프랑스에 부여
- 이사회 결정 93/111(93.2.15)
 - 제6차 부가가치세(VAT)지침 17조에 반하는 내용의 선택적 법령의 적용권한을 영국에 부여

<기 술>

- 이사회 규칙(EEC) 3955/92(92.12.21)
 - 미국, 일본, 러시아와 EC사이의 국제과학기술센터(Inter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entre)설립 협약체결에 관한 규칙

<직업 훈련>

- 위원회 결정 93/119(92.12.23)
 - 독일에서의 獸醫부문에서 종사하는 자를 위한 심화훈련프로그램의 조직

<수 송>

- 위원회 결정 92/552(92.10.21)
 - 런던(Heathrow)-브뤼셀간 노선에 있어서의 수송 빈도수의 증가에 대한 규칙 2343/90의 10(3)조항 적용을 검토
- 이사회 규칙(EEC) 3577/92(92.12.7)
 - 役務(Service)제공 자유의 원칙을 회원국내 해상운송(연안항행

〈Maritime Cabotage〉)에 적용

- 이사회 규칙(EEC) 3578/92(92.12.7)
 - 철도, 도로, 내수로 운송에의 보조금 지급에 관한 규칙 1107/70을 개정
- 위원회 규칙(EEC) 3618/92(92.12.15)
 - 항공운송부문 협정, 결정, 공동행위 중 특정부문에 EEC 85(3)조항을 적용
- 위원회 지침 92/106(92.12.7)
 - 회원국간 특정유형의 육,해,공 복합운송(Combined Transport of Goods)에 적용될 공동규칙을 제정
- 위원회 결정 93/117(92.12.22)
 - 한편으로 EC, 오스트리아간 또 한편으로 EC, 스위스간의 통과교통(Transit Traffic)협약들에서 등장하는 행정적 조치들의 승인
- 위원회 결정 93/125(93.2.17)
 - 役務(서비스)제공 자유의 원칙을 회원국내의 해상운송에 적용함에 있어서 규칙3577/92 5조항에 따라서 위원회가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 Measures)를 채택해 줄 것을 스페인이 요구, 이것에 관한 결정
- 이사회 규칙(EEC) 3903/92(92.12.21)
 - 관세부과대상가액의 결정
- 이사회 규칙(EEC) 3912/92(92.12.17)
 - (제3국에) 등록되거나 제3국에의 운항에 투입되는 운송수단에 대해 공동체내에서 취해지는 도로, 내수운송분야의 통제에 관한 규칙
- 이사회 규칙(EEC) 95/93(93.1.18)
 - 공동체 공항에서의 자동판매기(Slot) 할당에 관한 공동 규칙
- 위원회 결정 93/45(92.12.22)
 - 육,해,공 복합운송(Combined Transport)을 촉진할 시험계획(Pilot Schemes)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승인

* 참고자료 : Current Law Monthly Digest,(London, UK)
1993.1-3.

2. 유럽공동체법원판례

<농업분야>

- DOWLING(WILLIAM) v. IRELAND, ATT-GEN. AND MINISTER FOR FOOD AND AGRICULTURE, European Ct.J., Third Chamber-C-85/90, October 22, 1992.

유럽공동체의 공동농업정책에 의해 1978년 11월부터 1982년 12월까지의 기간동안 농지전환을 수행해야 할 아일랜드 농부인 원고는 1984년까지 심장질환으로 육체노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일랜드가 규칙 857/84의 적용기준년도로 정한 1983년의 우유출하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해 자신의 우유기준출하량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상기의 규칙을 개정하는 규칙 764/89가 발효한 후 아일랜드의 관할기관에 동 규칙 제3조(a)(1)에 의거한 특별기준출하량을 잠정적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동 조항은 1983년 10월 1일 전까지 농지전환기간이 만료한 생산업자에 대하여는 특별기준출하량을 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요청이 거부되었다. 이와 관련한 원고의 소송을 수리한 유럽공동체 법원은 市場非出荷期限 또는 농지전환기간이 1983년 1월 1일 전에 만료한 생산업자 및 1981년 또는 1982년에 우유를 출하하지 아니한 생산업자에게는 기준출하량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유럽공동체의 어떠한 규범에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TENUTA DI BOSCO v. MINISTERO DELLE FINANZE, European Ct.J., Second Chamber-C-162/91, October 15, 1992.

농업구조의 효율성 개선에 관한 규칙 797/85의 제2조 5항은 주된 직업으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부의 범위를 회원국들이 개별적으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적 형태만을 문제삼아 자본회사(capital company)를 그 범위에서 배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 OPENBAAR MINISTERIE v. LEENDEERT VAN DER TAS,

European Ct. J. C-143/91, October 8, 1992.

원고는 네덜란드에서 가축사용용 호르몬 작용을 하는 물질에 관한 국내법을 위반하여 Ethinylöestradiol 17 α 를 취급하였다는 이유로 소추되었는 바, 동 국내법이 유럽공동체 지침 81/602와 88/146에 배치된다는 이유로 유럽공동체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공동체 법원은 네덜란드의 관련 국내법이 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된 상기의 지침에서 일탈한 것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 GERMANY v. COMMISSION, (C-240/90) European Ct.J.-C-240/90, October 27, 1992.

양고기생산자를 위한 지원금적용에 관한 위원회규칙 3007/84 및 농가소득에 대한 잠정적 지원제도에 관한 위원회규칙 3813/89의 일부규정에 대해 무효를 주장한 독일정부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BELGIUM v. SULKER EXPORT N.V., (C-248/91) European Ct. J. - C-284/91, October 27, 1992

벨기에의 국내소송과정에서 제기된 이사회규칙3330/74의 제15조의 해석문제에 대한 선결적 부탁에 대해서 공동체법원은 제3국으로의 수출대기중 도난당한 국내생산품에 대하여는 수입세가 부가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 TEULIE v. CAVE COOPERATIVE "LES VIGNERONS DE PUISSALICON", (C-251/91) European Ct.J., First Chamber-C-251/91, November 11, 1992.

프랑스는 규칙 1442/88의 제7조에 따라 포도주협동조합을 위해 포도생산포기농가에 부여되는 프리미엄에 15%의 세금을 부과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포도주협동조합을 위한 일률적 세금부과는 규칙 1442/88에 위배된다는 견지에서 납부한 세금의 환부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공동체법원은, 회원국은 15%의 범위내에서 포도주협동농장에게 할당되어야할 프리미엄의 비율을 확일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 COMPTOIR NATIONAL TECHNIQUE AGRICOLE(CNTA) v. MINISTER OF AGRICULTURE,(C-127/91) European Ct.J., Fourth Chamber - C - 127/91, November 12, 1992.

CNTA에 대하여 식물종자가공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급한 전도금을 재납부하도록한 농업장관의 결정에 대한 거부와 관련하여 공동체법원은 보조금지급(이사회규칙 2114/71)은 위원회규칙 1204/72의 제 5조(1)(b)의 조건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 CEBAG B.V. v. E.C.COMMISSION(C-142/91), Financial Times, February 16, 1993, European Ct.J.

食品補助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유럽공동체 위원회는 회원국 업자들의 공급지연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감액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평지기름(colza oil)을 수출하는 덴마크 수출업자가 당해 기름의 공급을 지체하였다고 해서 유럽공동체 위원회가 계약금액을 감액하고 공급보증금의 반환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핵에너지>

- ADVANCED NUCLEAR FUELS GmbH v. COMMISSION (C-308/90), The Times, February 11, 1993, European Ct.J.

계획된 용도를 벗어난 핵물질의 전용방지에 관한 EAEC규정의 불이행은 유럽핵공동체조약의 심각한 위반이다.

<통상정책>

- COMMISSION v. GREECE, European Ct.J.-C-65/91, October 14, 1992.

그리스는 공동관세율이 적용되는 성냥을 “D list”에 게재하여 스웨덴과 불가리아로부터의 성냥수입을 불허함으로써 유럽공동체와 스웨덴간의 협정 제13조 및 규칙 288/82과 3420/83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회사법〉

- KERAFINA-KERAMISCHE UND FINANZ HOLDING AEG AND VIOKTIMATI KI AEBE v. GREECE, (C-134/91, 135/91) European Ct.J., Sixth Chamber-C-134/91, 135/91, November 12, 1992.

그리스 법률 1386/1983하에서의 기업 자본증자와 관련하여 그리스의 법률은 이사회 지침 77/91/EEC 및 위원회결정 88/167/EEC에 저촉된다고 판시하고 공동체법의 직접효력을 인정하였다.

- E.C.COMMISSION v. NETHERLANDS, European Ct.J.-C-157/91, November 17, 1992.

회사의 회계장부의 法定監査를 수행할 책무를 가진 監事의 승인에 관한 제6차 유럽공동체指針이 마련되었는데, 네덜란드가 국내 관련 법규내에 그러한 내용의 유럽공동체지침을 반영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네덜란드는 유럽공동체條約上的 義務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경쟁〉

- AUTOMECH v. COMMISSION, CFI-T-24/90, September 18, 1992.

규칙 17의 제85조 1항은 일정한 경쟁제한 협정과 관행을 금지하고 있으나 제3자에게 입힌 피해에 대한 배상 의무 등 제81조 위반의 법적 효과에 대하여는 국내법에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유럽공동체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제85조 1항의 위반을 시정할 목적으로 일방 당사자에게 일정한 계약관계를 설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 NBV AND NVB v. COMMISSION CFI, Second Chamber-T-138/89, September 17, 1992.

EEC조약 173조에 의거한 소송은 특정한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만 제기될 수 있다. 원고가 서명한 은행간 협정은 비록 그것이 경쟁 제한적 성격을 갖는 것이기는 하지만 유럽공동체 위원회가 내린 관련 결정에 의해 원고는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동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

- APPLE CORPS. v. APPLE COMPUTER(1992)F.S.R.389, Ferris J.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P와 D간에 자신들의 경영범위내에서만 그 상표사용을 제한하기로 하는 협정을 체결하였고 이를 유럽공동체 위원회에 통보하였다. D는 P의 전세계에 걸친 상표등록은 P가 그 상표를 오랫동안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P는 D와 체결한 협정의 認容조항을 위반하였다고 반박하였다. P는 유럽공동체 위원회 심리과정에서 D가 극비이라고 주장하여 판사에게만 비밀리에 낭독되었던 D의 소송문서 일부를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원회는 유럽공동체 규칙17조 제11조와 제14조에 규정된 문서의 개시를 요구할 수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 TELEMARZI CABRUZZO SpA v. CIRCOSTEL, MINISTERO DELLE POSTE E TELECOMUNICAZIONI E MINISTERO DELLA DIFENSA (C-320/90, 321/90, 322/90), Financial Times, February 1, 1993, European Ct.J.

방송규제 및 방송규제의 EC경쟁법과의 양립가능성에 대한 이탈리아 법원의 선결적 판결요청에 대하여 공동체법원은 선결적 판결의 조건으로써 문제의 사실 및 법률관계확인에 대한 국내법원의 의무이행을 요구하였다.

- RENDO N.V. v. E.C.COMMISSION CFI-T-16/91, November 18, 1992.

특정 회사들 사이에 배타적으로 전기의 생산, 수출 및 수입을 전담하기로 합의하는 계약이 체결되었고, 제3의 회사가 그러한 배타적 내용의 계약은 유럽공동체 경쟁질서유지에 관한 공동체조약 제85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하였는 바, 유럽공동체 위원회는 그러한 계약이 네델란드의 관련 국내법에 따라서 체결된 것이라면 네델란드의 당해 국내법이 공동체조약 제85조에 위반되는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선

결문제라고 결정하였다.

- POU CET v. ASSURANCES GENERALE DE FRANCE (AGF) ET CAISSE MUTUELLE REGIONALE DU LANGUEDOC-ROUSSILLON; PISTRE v. CAISSE AUTONOME NATIONALE DE COMPENSATION DE LASURANCE VIELLESSE DES ARTISANS(C-159/91; 160/91), Financial Times, February 23, 1993, European Ct.J.

社會保障을 담당한 사무소들도 유럽공동체 경쟁법의 적용대상임으로 당해 사무소들이 사설 보험회사들과 자유로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게 되자, 유럽공동체 法院이 이러한 다툼에 관한 선결문제의 해결의 차원에서, 유럽공동체 경쟁법이 경제활동 주체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보장 담당 사무소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 SPAIN v. E.C. COMMISSION European Ct.J.-C-271/90, 281/90, 289/90, November 17, 1992.

스페인 등의 3개 회원국들은, 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와의 사이에 체결된 長期契約을 수정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의 유럽공동체 위원회 지침 (Dir. 90/388/EEC) 특히 동 지침 제8조가 무효라고 주장하였는 바, 유럽공동체 법원은 본건의 장기계약상의 특정 권리를 박탈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서 유럽공동체 조약 제90조 제3항을 드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고 또한 문제된 지침은 특정 권리를 박탈하는 명백하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도 않고 권리박탈을 위한 공동체조약상의 근거조항도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 지침 제8조는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관 세〉

- DEUTSCHE SHELL AKTIEN GESELLSCHAFT v. HAUPTZOLLAMT HAMBURG - HARBURG(C-188/91), Financial Times, January 26, 1993, European Ct.J.

관세위원회의 법적 행위가 구속력이 없고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지만 국내법원은 이를 원용할 수 있다.

- TEXTILVERHANDLUNGSUNION GmbH v. HAUPTZOLLAMT NURNBERGFURTH (C-291/91) Financial Times, February 16, 1993, European Ct.J.

방직용 실이 韓國에서 독일로 수입되어 독일회사 TVU이 당해 실에 염색을 한 후 불가리아에 재수출되었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소위 域內的 處理(inward-processing)의 원칙이 적용되고 일반적으로 독일에의 수입당시에 부과된 관세는 재수출시에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이 인용되었다.

<고 용>

- RASK AND CHRISTENSEN v. ISS KANTINESERVICE A/S, (C-209/91) European Ct.J.-C-209/91, November 12, 1992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협약에 의해 PH사를 승계한 ISS사에게 PH사가 근로자에게 약속했던 임금조건을 유지해야할 의무는 없다.

- E.C. COMMISSION v. BELGIUM(C-173/91), Financial Times, February 23, 1993, European Ct.J.

벨기에 국내법은 60세이상 연령에 달한 사람이 실직되었을 때에는 실업보조금이외에 추가적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60세이상의 여자는 그러한 추가적 보조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바, 유럽공동체 법원은 그러한 벨기에 국내법이 남녀차별금지에 관한 유럽공동체 규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

<유럽공동체법원>

- COUNCIL v. EUROPEAN PARLIAMENT, European Ct.J.-C-295/90, October 22, 1992.

유럽공동체 이사회는, 변론절차에서 또는 구두절차에서 판결의 효력

의 일시적 제한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 바 없음을 이유로, 유럽공동체 법원이 내린 1992년 7월7일 판결문에서 “이사회”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이사회는 동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도 표명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귀절을 삽입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유럽공동체 법원은 이사회가 법원 판결에 앞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격의 문제를 제기한 바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하였다.

○ COMMISSION v. ITALY, European Ct.J-C-262/91, October 14, 1992.

유럽공동체 위원회는 이탈리아가 124/86 및 125/86의 두 판결에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EEC조약 제171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확인판결을 청구하였으며, 유럽공동체 법원은 이러한 위원회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어 업>

○ SPAIN v. COUNCIL, European Ct.J-C-70/90, 71-90 and 73/90, October 13, 1992.

스웨덴은 Faroe제도 및 노르웨이 배타적 경제수역 등에서의 회원국 간의 1990년 어획쿼터량 배당에 관한 이사회 규칙 4053/89, 4049/89 및 4051/89 등이 어업활동의 상대적 안정성 원칙과 차별금지원칙에 대한 위반이라는 이유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청구를 유럽공동체 법원에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유럽공동체 법원은 새로운 회원국은 가입전의 상황을 원용할 수 없으며 어업활동의 상대적 안정성 원칙은 각 회원국에 고정된 어획량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고정된 비율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그 청구를 기각하였다.

○ PORTUGAL AND SPAIN v. COUNCIL, European Ct.J-C-63/90 and 67/90, October 13, 1992.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1986년 EC 가입하였으나 그린랜드 해역에서의 어획량쿼터를 전혀 배정받지 못해 왔기 때문에 어업활동의 상대적 안정성 원칙과 EC법의 일반원칙에 위배된 것이라는 이유로 1990년

그린랜드 해역의 어획량쿼터를 정한 이사회 규칙 4054/89이 무효임을 선언하여 주도록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유럽공동체 법원은 새로운 회원국은 가입전의 상황을 원용할 수 없으며 어업활동의 상대적 안정성 원칙은 각 회원국에 고정된 어획량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고정된 비율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그 청구를 기각하였다.

<상품의 자유이동>

- ASIA MOTOR FRANCE v. COMMISSION CFI-T-28/90, September 18, 1992.

원고는 벨기에와 룩셈부르크 등 다른 회원국에서는 자유롭게 유통되는 일본제 차량이 프랑스에서는 5개의 수입업자간에 체결된 불법적인 협정에 의해 수입과 판매가 제한받고 있다는 이유로 위원회에 청원을 제출하였으나 유럽공동체 위원회가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위원회가 EEC조약 제30조 및 제85조에 의거한 결정을 내리지 아니하였음을 선언하여 줄 것 또한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 판정을 내려줄 것을 유럽공동체 법원에 청구하였다. 그런데 그 원고가 소를 제기한 후 위원회는 그 청원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법원은 위원회가 원고의 소송개시 후 그리고 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EEC조약 제175조에 의거하여 구제조치의 형태 변경을 요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EXPORTUR S.A. v. LOR S.A. AND CONFISERIE DU TECH.(C-3/91) European Ct.J.-C-3/91, Noverber 10, 1992.

원산지명칭의 보호와 출처표시에 관한 프랑스·스페인간의 조약은 공정경쟁을 목표로하고 있으며 공동체조약 36조가 의미하는 공업 및 상업재산권의 보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HANSA FLEISCH ERNST MUNDT GmbH & CO, K.G. v.

LANDRAT DES KREISES SCHLESWIG-FLENSBURG European Ct.J., Second Chamber-C-156/91, November 10, 1992.

주정부의 관할내에 시행되는 건강진단과 관련하여 지불되어야 할 비용의 총액과 관련된 소송에서 공동체법원은 결정88/408의 제2(1)의 규정에 따른 초과비용지급여부는 각 회원국이 자국의 지역당국에 위임하였다고 판결하였다.

- CRIMINAL PROCEEDINGS AGAINST TERVOORT(J.S. W.), (C-219/91) European Ct.J.-C-219/91, October 27, 1992.

공공보건당국에 의해 등록되지 않은 약품의 판매를 금지한 네덜란드 국내법을 위반한 혐의로 형사소추를 당한 D가 자신의 약초판매를 국내법에 의한 약품으로 분류한 것은 공동체지침 65/65의 위반이라고 주장한 데 대하여 공동체법원은 공동체법상 약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에 관하여는 회원국의 국내법에 의해 규율된다고 판시하였다.

- GENERICS(U.K.) & HARRIS PHARMACEUTICALS v. SMITH KLINE & FRENCH LABORATORIES(C-191/90), European Ct.J.-C-191/90, October 27, 1992.

영국내에 특허권을 갖고 있는 SKF와 G 및 H의 공동체 비회원국 및 포르투갈과 스페인으로부터의 당해 특허약품 수입에 관한 분쟁에서, 특허권을 부여했지만 특허제품은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공동체회원국 영역내에, 공동체 비회원국으로부터의 특허품수입에 대한 권리도 특허권사용자에게 부여하는 국가관행은 특허권자가 자국내에서 특허제품을 생산할 때보다 더 심한 경쟁에 노출되도록하여 다른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보다는 당해국가 영역내에서 특허제품을 생산토록하기 때문에 차별적이라고 판시하였다.

- E.C. COMMISSION v. IRELAND, European Ct.J.-C-236/91, November 17, 1992.

순종의 소를 번식시키기 위한 번식용 동물의 인정 및 수용에 관하여 유럽공동체 지침(Dir. 87/328/EEC)이 마련되어 있는 데, 아일랜드는 동 지침을 시행하기 위한 국내법규를 마련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서 유럽공동체 위원회가 아일랜드의 동 지침 위반 및 유럽공동체 조약 위반을 주장하였고, 유럽공동체 법원도 조약 및 지침 위반을 인용하였다.

○ CRESPO, Re[1992]F.S.R.430, French Supreme Ct.

스페인의 부품회사는 프랑스 자동차회사 르노의 자동차 부품을 모방하여 제조하는 회사로서 그러한 부품을 독일에 수출하였는 바, 동 부품이 프랑스 영토를 통과하여 운송되는 도중에 프랑스 자동차 회사 르노의 신청에 의하여 압류되고 스페인 회사는 의장권침해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스페인 회사는 상품의 자유로운 유통의 원칙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하였는 바, 공동체 법원은 상품의 자유로운 유통의 원칙도 프랑스 영토내에서 지적소유권의 정당한 행사를 제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여 상품의 자유유통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 E.C. COMMISSION v. IRELAND, European Ct.J.-C-235/91, November 17, 1992.

아일랜드정부는 소와 돼지의 정자의 수입에 관한 일정한 허가를 요구하고 여러가지 제한적 조건을 부과하였는 바, 아일랜드는 상품의 자유로운 유통에 관한 유럽공동체 조약 제30조, 공동체의 역내 육류 시장에 관한 공동체 규칙 (Reg. 805/68/EEC), 소의 순종 번식에 관한 공동체 지침 (Dir. 77/504/EEC)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사람의 자유이동〉

○ PETIT v. OFFICE NATIONAL DES PENSIONS, European Ct.J., Fifth Chamber-C-143/91, July 22, 1992.

EEC조약 제48조 및 제51조 1항 그리고 회원국내에서 이주한 피고 용인, 자영업자 및 그 가족에 대하여 적용되는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이

사회 규칙 1408/71은 모든 요소가 하나의 회원국내에서만 존재하는 상황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 GRISVARD AND KREITZ v. ASSEDIC, European Ct.J., First Chamber - C - 201/91, October 1, 1992.

공동체내에서 이동한 피용자 및 그 가족에 대해 적용되는 규칙 1408/71 제68(1) 및 71(1)(a)(ii)의 규정은, 국경내의 완전 실업자에게 실업수당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거주지국의 기관이 실업수당산정기 초가 되는 보수에 대하여는 고용을 얻고 있는 국가에서 시행중인 상한 선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해석되어야 한다.

- FOURNIER v. VAN WERVEN, (C-73/89) European Ct.J., Sixth Chamber, C-73/89, November 12, 1992.

독일에 등록된 자동차가 도난당한 후 네덜란드에 허위등록되어있는 상태에서 프랑스에서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하여 누가 교통사고의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공동체법원은 이사회지침 72/166의 제1조4항은 자동차의 번호판이 비록 허위에 의한 번호판이라도 문제의 사고당시 번호판을 발급한 회원국에 자동차가 등록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

- E.C. COMMISSION v. BELGIUM, European Ct.J.-C-326/90, November 10, 1992.

벨기에가 이사회규칙 1612/68과 1408/71에 근거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확인판결을 요구한 위원회에 대하여 벨기에가 사회보장의 적용에 자국영토내에서의 일정기간거주요건을 유지하는 것은 공동체법위반이라고 판시하였다.

- WERNER (HANS) v. FINANZAMT AACHEN-INNENSTADT (C-112/91), Financial Times, February 1, 1993, European Ct.J.

독일거주 납세자에 대하여 세금공제를 해주는 독일의 조세법규는 공동체법과 상충되지 않으며 차별적인 것이 아니다.

- E.C. COMMISSION v. U.K. European Ct.J.-C-279/89, November 17, 1992.

영국은 영국에 등록된 어선으로 하여금 어업면허를 받도록 요구하고 영국과의 “實質的인 經濟的 關係”가 있는 경우에만 漁業免許가 부여되는 바, 그 기준이 되는 영국과의 “實質的인 經濟的 關係”는 어선의 활동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船員들의 국적에 대해서도 1993년 1월 1일까지는 스페인과 포르투갈 국적을 가진 자 이외의 유럽공동체 회원국의 국적을 가진 선원이 75%이상으로 구성된 경우에 한하여 어업면허가 부여되도록 되어, 그러한 어업면허 기준은 노동력의 자유이동에 관한 공동체 조약 제52조 및 제59조의 위반이라고 판시하였다.

- BOGANA v. UNION NATIONALE DE MUTUALITES SOCIALISTES(C-193/92), Financial Times, February 18, 1993, European Ct.J.

이탈리아의 국적을 가진 어느 노동자가 질병에 걸리기 이전에 이탈리아와 벨기에에서 일해왔었는데, 벨기에 정부는 다른 회원국에서 받을 수 있는 질병급여(sickness benefit)를 환율 등에 따라서 다시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유럽공동체 법원은 어느 노동자가 둘이상의 회원국의 급여규칙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 가장 유리한 법규에 따라서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서비스의 자유이동>

- VERENIGING VERONICA OMROEP ORGANISATIE v. COMMISSARIAT VOOR DE MEDIA(C-148/91), Financial Times, February 9, 1993, European Ct.J.

덴마크의 방송법은 방송국들이 일반 공중의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및 정신적 요구를 충족시킬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정 덴마크 방송국이 룩셈부르크 방송국의 제3국에의 상업적 방송을 위한 시설확장에 투자하는 것이 금지되었는 바, 유럽공동체 법원은 문화적 목적 등을 위하여 방송국의 상업적 서비스와 투자를 제한하는 회원국 국내법은 유럽공동체 조약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관할권〉

- SHEARSON LEHMANN HUTTON v. TVB GmbH(C-89/91), Financial Times, January 26, 1993, European Ct.J.

EC사법협약에 의하면 소비자는 자기의 주소지 국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는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EC사법협약에 의한 관할권원칙의 예외이다. 이 예외적 원칙은 계약의 타방 당사자(기업)와 평등한 위치에 있지 않은 다른 당사자(개인)에 대한 혜택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의 원고는 회사이므로 소비자특별보호원칙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소송절차(민사)〉

- MINALMET GmbH v. BRANDEIS, European Ct.J., Fourth Chamber - C-123/91 November 12, 1992.

B는 M에 대한 영국의 채무불이행 판결을 독일내에서 강제집행하도록 청구하였으나 M은 소환장이 독일법에 따라 자신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제집행을 거부하였다. 공동체법원은 브뤼셀조약의 제 27조(2)는 어느 일방 조약 당사국에서 이루어진 결석재판이 다른 계약 당사국에서 인정됨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판사하였다.

〈사회보장〉

- MOLENBROEK v. BESTUUR VAN DE SOCIALE VERZEKERINGSBANK, European Ct., Second Chamber C-226/91 European Ct.J., Second Chamber-C-226/91, November 19, 1992.

덴마크의 노후연금에 관한 국내법에 의하면 65세에 달한 사람은 노후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지만 배우자가 65세 미만이고 일정한 수입이 있으면 그러한 수입에 따라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한 연금만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바, 대부분의 경우에 남자가 여자 배우자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노후연금 규정은 남녀차별적인 규정에 해당하는가 여부

가 문제되었는 바, 유럽공동체 법원은 남녀중 65세미만인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노후연금을 지급하도록 허용하는 측면을 고려하여 남녀차별적인 국내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조 세〉

- COMMERZ-CREDIT BANK v. FINANZAMT SAARBRUCK-EN European Ct.J., First Chamber-C-50/91, October 13, 1992.

원고가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운영되는 지점이 아니라는 이유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지 않은 독일 재무당국에 대하여 공동체법원은 자본의 증가에 대한 간접세와 관련된 지침 69/335의 제7조(1)(b)의 의미에 포함되는 사무의 일부를 담당하는 지점은 자본과 인력의 혼합체로 이루어져 있기에 세제혜택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 WEBER HAUS v. FINANZAMT FREIBURG-LAND, European Ct.J., First Chamber-C-49/91, October 13, 1992.

동일 그룹내의 합자기업에 의한 이익잉여금 이전에 대한 자본세 과세에 관하여 공동체법원은 이사회 지침69/335의 제4조(2)(b)에 의하여 동일주주를 갖는 두 기업간의 이익잉여금 이전은 자본세의 과세대상이지만, 기업이 이익을 기업의 주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자본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 BEHEERSMAATSCHAPPIJ VAN GINKEL WAD-DINSVEEN B.V.:REISEN PASSAGEBUREAU VAN GINKEL B.V. v. INSPECTEUR DER OMZETBELASTING, UTRECHT,(C-163/91) European Ct.J., Third Chamber-C-163/91, November 12, 1992.

고객에게 숙박시설 알선만을 제공한 관광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과는 관광회사의 알선 수수료를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관광회사에 지불한 총금액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세무소의 주장에 대하여 공동체법원은 그러한 세법체제는 지침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

○ COMMISSION v. GERMANY, (C-74/91) European Ct.J.-C-74/91, October 27, 1992.

위원회는 독일이 여행사에 대해 제6부가가치세지침의 규정과 양립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제를 적용함으로써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확인판결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공동체법원은 독일이 여행사에 의한 다양한 형태의 거래에 대해 일반적인 부가가치세를 적용해서는 안되며 지침 제26조에 의한 원칙에 근거하여 특별세제를 채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 E.C. COMMISSION v. GREECE European Ct.J.-C-105/91, November 17, 1992.

그리스정부는 소비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국내 기술을 이용하여 조립된 私製 自動車에 대해서보다 다른 회원국의 기술을 이용하여 조립된 사제자동차에 대하여 더 높은 소비세를 부과하였고, 그러한 소비세 부과가 문제되자 그리스 정부는 그리스 국내업자들의 경쟁상 열등한 지위를 보상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이고 당해 조세혜택을 받는 그리스 국내업자의 자동차 판매총액이 오직 국내시장의 10%만을 차지하고 있다고 항변하였으나, 차별적인 소비세부과는 유럽공동체 조약 제95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

* 참고자료 : Current Law Monthly Digest, (London, UK)
1993.1-3.

외국법제동향분석 93-2

獨立國家共同體(CIS) 憲章

1993年 6月 25日 印刷

1993年 6月 30日 發行

發行人 李 世 薰

發行處 韓 國 法 制 研 究 院

印刷處 (株) 韓 國 컴 퓨 터 産 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03

전 화 : 722-2901/3, 722-0163/5

등록번호 : 1981. 8.11 제 1-190호

本院의 承認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

값 2,000원

